

碩士學位論文

組織暴力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110,835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梁 彰 培

碩士學位論文

組織暴力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Reality and Countermeasures to Organized Violence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梁 彰 培

2001年 7月 日

組織暴力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Reality and Countermeasures to Organized Violence

指導教授 金 昌 君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梁 彰 培

梁彰培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審查委員長

委 員

委 員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3
第 2 章 組織犯罪의 概觀	5
第 1 節 組織犯罪의 概念.....	5
1. 美國의 정의와 사용례.....	5
2. 日本의 정의와 사용례.....	7
3. 其他.....	8
4. 우리 나라의 정의와 사용례.....	9
5. 본논문의 정의와 사용례.....	12
第 2 節 組織犯罪의 特性과 類型.....	13
1. 組織犯罪의 特性.....	13
2. 組織犯罪의 類型.....	18
第 3 章 우리 나라 組織暴力의 變遷過程.....	21
第 1 節 時代別 變遷過程	21
1. 高麗時代	21
2. 朝鮮時代	22
3. 日帝強占期 時代.....	22
4. 第 1·2共和國	23
5. 第 3共和國	24
6. 第 4共和國	25

7. 第 5共和國	26
8. 第 6共和國 以後.....	27
第 2 節 地域別 生成 및 變遷過程	29
1. 서울 및 首都圈 地域	29
2. 仁川·京畿 地域	33
3. 大邱·慶北, 釜山·慶南 地域	37
4. 忠南·北 地域	45
5. 光州, 全·南北地域	48
6. 江原道 地域	54
7. 濟州道 地域	56
第 4 章 우리 나라 組織暴力의 實態	60
第 1 節 組織暴力의 構造	60
1. 組織의 數와 構成員數.....	60
2. 目的과 組織名.....	62
3. 階級과 呼稱	62
4. 活動 區域	65
5. 行動 綱領.....	65
6. 選拔加入과 脫退	67
第 2 節 組織의 保護·維持	68
1. 組織의 暴力行使	68
2. 携帶·使用武器	69
3. 資金의 調達·管理	69
4. 他地域 및 他組織과의 連繫性	71
5. 擁護(庇護)勢力	72

第 3 節 活動 類型	73
1. 遊興業所 就業, 喝取, 經營	73
2. 遊興從事者 供給業 獨占 및 喝取	74
3. 秘密 賭博場 開場	74
4. 遊技場 業所 喝取	74
5. 零細 露店商 喝取	75
6. 麻藥類 密賣 및 密輸.....	75
7. 請負暴力·民事介入暴力 行使.....	75
8. 建設業界 浸透	76
9. 私債業.....	77
10. 其他 類型.....	77
第 4 節 最近의 動向.....	79
1. 企業化와 新種犯罪로 領域 擴大.....	79
2. 組織員의 底年齡化	81
3. 海外 進出	82
第 5 章 組織暴力에 대한 對應 方案	85
第 1 節 法·制度的인 對應 方案	86
1. 現行法 整備 및 統合對策法 制定	86
2. 證人保護制度 強化	89
3. 不淨 收益金 沒收規定 改正	93
第 2 節 搜查制度의 改善 方案.....	95
1. 專擔搜查體制 設置 및 要員 專門化.....	95
2. 情報管理 徹底.....	96
3. 搜查技法의 開發.....	97
4. 擁護勢力에 대한 團束 強化	98

第 3 節 犯罪豫防 活動 強化 方案	99
1. 靑少年과 暴力集團과의 連繫 遮斷	99
2. 社會環境 改善	101
3. 暴力追放 弘報活動 展開.....	101
第 4 節 國際協力 強化 方案.....	102
1. 國際刑事 共助機構 設立과 國家間 協助體制 維持.....	103
2. 關聯法規의 整備.....	105
3. 인터폴을 통한 積極的인 共助搜查	105
第 6 章 結 論.....	106
參考 文獻	109
Summary.....	115



表 目 次

<表 1> 文獻上の 組織犯罪의 定義	8
<表 2> 學者에 따른 組織犯罪의 特性 分類	15
<表 3> 서울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32
<表 4> 仁川·京畿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37
<表 5> 大邱·慶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40
<表 6> 釜山·慶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44
<表 7> 忠南·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48
<表 8> 光州·全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52
<表 9> 全州·全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54
<表 10> 江原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56
<表 11> 濟州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59
<表 12> 地域別 暴力組織數와 構成員數	61
<表 13> 活動分野別 組織暴力輩 檢學 現況	78
<表 14> 犯罪 類型別 組織暴力輩 檢學 現況	79
<表 15> 組織暴力輩 年齡別 現況	82
<表 16> 國內 組織暴力 海外 進出 事例.....	84

第 I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인간이 社會共同體를 이루어 살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도 있듯이 법 시스템만으로 범죄를 제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불완전한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든 범죄중에 대표적인 범죄가 組織暴力犯罪이다. 그런데 조직폭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組織化, 國際化, 凶暴化, 企業化, 年齡의 下向化 性向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파고들어 상습적으로 폭력·협박을 행사하며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신을 疲弊化시키는 등 서민의 경제생활을 저해하는 독버섯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도 척결해야 할 제1의 公敵¹⁾으로 指目받고 있는 범죄가 되었다.

최근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조직폭력에 대한 피해와 우려는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의 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不盡한 실정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덜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 조직폭력집단도 미국·러시아의 마피아(Mafia)나 일본의 야쿠자(Yakuza), 홍콩의 삼합會(Triads)처럼 국제적인 범죄집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조직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이들에 대한 적절한 統制對策 마련에 온힘을 집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요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첫째, 조직폭력범죄가 企業型으로 정착하고 있다. 예전엔 주로 유흥업소나 건설업체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이권을 챙기는 囑取型이 많았으나 요즘은 대부분 사업형으로 바뀌고 있고, 더욱이 合法的 事業家로 변신하여 外形的 폭력 대신 知的

1) 경찰청, 「경찰백서」, 2000. 130면.

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地域上着化의 樣相이다. 각 지역의 대표적 조직폭력배들이 각종 利權에 개입해 모은 상당한 재산을 기반으로 지역유지로 변신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후보 지원 또는 각종 사회활동 등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셋째, 조직의 國際化 現狀이다. 檢·警 등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내에서 설 땅이 좁아진 폭력배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東南亞가 주요 활동무대인데, 최근엔 中南美까지 진출하고 있어 해외 조직과의 연대도 점차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일본 야쿠자와의 유대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홍콩 三合會나 러시아 마피아와도 접촉해 국제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조직폭력문제는 날로 소리없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외국 조직범죄집단과는 다른 성장과정과 면모를 지닌 우리 나라 특유의 조직폭력집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실정에 맞는 근절 대책을 모색하는데 主目的을 두었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범죄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조직범죄는 조직폭력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조직폭력집단에 대해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별로 生成過程, 系譜, 조직의 운영 유지·실태, 현재상황 등을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우리 실정에 맞는 범죄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선 이들 집단에 대해 정밀한 經驗的 調査와 設問調査, 參與 觀察, 實證的인 연구방법을 수행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방법론적인 제약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관련 주제에 대한 先行 研究論文과 文獻調査,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자료들을 기술적인 접근 방법(*descriptive approach*)과 비교 분석적인 접근 방법(*comparative approach*)을 사용하여 分析·檢討하였다.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과 편제를 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조직범죄와 조직폭력을 특정짓기 위하여 미국, 일본, 우리 나라 등의 정의와 특성 및 유형을 比較·分析하였다. 제3장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변천과정과 각 지방별로 폭력조직의 生成過程과 系譜를 추적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조직폭력의 실태에 대해 어떤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조직의 보호·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사현장 실무자들과의 면담실시를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조직폭력의 발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조직폭력에 대한 연구작업을 기초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조직폭력범죄를 제압하는데 있어 법적인 미비점과 실질적인 증인보호법 보완, 부정 수익금 몰수 방안 등 대처방안을 촉구하고, 수사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담수사체제 설치, 수사요원들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성, 날로 발전해 가는 범죄 양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수사기법 개발과 조직폭력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擁護勢力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폭력의 豫備軍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 및 청소년 불량씨클에 대한 차 단책, 폭력적인 사회환경 추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불량학생들을 위한 代案學校 설립의 필요성, 시민단체의 역할과 폭력추방운동의 중요성, 조직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권 搜查共助機構 設置와 범죄정보 교환 등 국가간 협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第 2 章 組織犯罪의 概觀

第 1 節 組織犯罪의 概念 整理

조직범죄와 조직폭력의 概念을 定立함에 있어 외국의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의 범죄현상에 부합하는 概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1. 美國의 定義와 使用例

미국에서는 조직범죄가 *syndicate, outfit, mob, arm, La Cosa Nostra*²⁾, *Mafia*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1) 法執行과 司法行政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의 정의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현재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로서는 가장 많은 인용과 비판을 받고 있는 정의이다. 이 위원회는 1967년의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서 조직범죄를 “미국의 국민과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활동하려는 사회”로 정의하고, 조직범죄는 “수만명의 범죄자들의 조직으로서 대단히 복잡한 조직구조에서 활동하며 합법적인 정부의 규율보다도 엄격하고 준엄하게 집행되는 규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대개 돈과 권력이며, 이들은 불법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에도 침투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³⁾

2) 聯邦組織 규제법상의 정의

조직범죄를 “永續性, 組織性, 규범의 존재, 賂物授受를 기본요건으로, 필요에 따라 全的 · 部分的으로 불법하며 은폐된 수단과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금전적, 상업적인 이익을 얻고, 뇌물수수를 통하여 그 자체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복잡한 조직구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활동에 연계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는 두목과 자체규범을 준수하는 개인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칠서정연하고 체계적

2)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임무’

3) 신용식, “조직범죄 규제 법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5면.

인 共謀에 의하여 활동하는 조직에 의한 범죄이다”⁴⁾라고 정의하였다.

3) 刑事司法 기준 및 목표에 관한 國家諮問委員會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이 위원회 소속의 조직범죄 특별반(*Task Force*)은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를 “強奪행위에 관여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복잡하게 얽힌 금융조작에 관여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형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주로 일삼는 개인들의 모든 집단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미국 聯邦機關, 특히 *FBI*나 법무성이 대체로 활용하고 있는 정의이다. 또한 이 위원회 보고서는 대부분의 연방법 및 모든 법들이 일반적인 처벌과 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위 정의에 첨가하여 흔히 직업적, 기업적, 정치적 또는 전통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범죄활동을 포함한 陰謀의인 성격을 가진 모든 집단범죄를 이 정의에 따라 조직범죄로 보고 있다.⁵⁾

4) 國立 組織犯罪 委員會의 定義

미국 법무부 산하의 국립조직범죄위원회에 참가한 정책입법 및 법률집행공무원들은 “조직범죄는 불법적인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갈, 기타 필요하다면 복잡한 재정적인 조작을 통하여 형법에 위반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고도로 규제되어 있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으며 폐쇄된 조합내에서 필요하다면 폭력단원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피한다. 그들 위법행위의 유형은 테러, 폭행, 납치, 고리대, 마약밀매, 도박죄 등에서 부터 교묘하고 복잡하게 은폐된 재물의 강요, 상업적인 뇌물제공, 정치적 부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⁶⁾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 조직범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학자들간에 합의된 내용을 살펴

4) 앞의 논문, 5면.

5) Organized Crime is not synonymous with the Mafia or La Cosa Nostra, the most experienced, diversified, and possibly best disciplined of conspiratorial groups(National Advisory committee, 1976, p.8).

6) 신용식, 앞의 논문, 6면.

보면 '불법적 활동을 통하여 이득을 추구하고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며 또 법집행으로부터 면책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를 이용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직범죄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의가 없을 정도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2. 日本의 定義와 使用例

日本에 조직폭력 집단을 傭, 야시, 的屋(테기아), 博徒(바쿠도) 등으로 불리고 있다.⁷⁾ 1991년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폭력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 또는 집단”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조직령 제10조의 2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집단으로서 단체의 위력을 배경으로 常習的·暴力的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생활자금 획득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松田昇은 “暴力團 범죄란 폭력단의 존속 및 활동과 관련해서 그 구성원이 범하는 범죄”라고 하고 있으며, 暴力團 범죄의 공통되는 특징으로

- ① 항상 暴力團의 불법적인 폭력성과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감행되어질 것(폭력조직성).
- ② 暴力團 조직의 존속을 기도하고 소위 항상적으로 감행되어질 것(항상성).
- ③ 범죄적 하위문화의 영향도 작용하고, 처우 곤란한 폭력단 관계자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각종 범죄가 감행되어지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다양성) 등을 들고 있다.⁹⁾

이상의 폭력단의 정의에 대하여 지난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폭력

7) 박석정, “조직범죄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2면.

8)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범죄백서」, (동경: 대장국인쇄국, 1982), 30면.

9) 김대식, “한국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 조직범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3면.

단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5월 15일 법률 제77호)에
서도 暴力團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3. 其他

외국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조직범죄의 개념과 정의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Frank Hagan¹⁰⁾은 1983년 이전 15년 동안의 13개 저서와 일부 政府報告書에 나타난 조직 범죄 개념에 동원된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表1>과 같다.

<表1> 文獻上的 組織犯罪 定義

특 징	저자의 수
組織的 位階의 持續(organized Hierachy Continuing)	13
犯罪를 통한 合理的 利得(Rational Profit through Crime)	11
武力이나 威脅의 使用(Use of Force or Threat)	10
免責維持를 위한 腐敗(Corruption to Maintain Immunity)	10
서비스에 대한 公共의 需要(Public Demend for Services)	6
特定市場에 대한 獨占(Monopoly over Particular Market)	4
制限된 構成員(Ristricted Membership)	3
非理念的(Non-Ideological)	2
專門化(Specialization)	2
秘密規律(Code of Secrecy)	2
廣範圍한 計劃(Extensive Planning)	2

자료 :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刑事政策研究 제18호, 1994. 10면.

표를 보면 조직범죄가 ① 다수인에 의한 위계적 조직체(형태)로서, ② 불법적 활동

10) Frank E. Hagan, *The Organized Crime Continuum : A Further Specification of a New Conceptual Model*, in : Criminal Justice Review, Vol. 8, NO, 2, Fall, 1983, pp. 52-57.

에 의한 이득을 추구(목적)하며, ③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고, ④ 범집행으로부터
免責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Albaneses*는 “조직범죄는 상당한 대중적 수요가 있는 불법활동으로부터 이득
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지속적 범죄사업이고 그의 존속은 무력 및 위협의
사용 또는 공무원의 腐敗를 통해 유지된다”¹¹⁾라고 정의하였다. *FBI*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구조를 갖고 그 기본적인 목적이 폭력, 公務員 매수, 뇌물공여, 공갈 등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금품을 지득함에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행한 영
향을 미치는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으로, 인터폴(*Interpol*)은 ‘일반적인 힘,
영향력,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私組織에 의한 계속적인 범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²⁾

이상과 같이 견해들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사회의 합법적인 분야와 범죄적인 부분으로부터의 상당한 수의 참여자를
포함하는 위계질서와 업무분담에 의하여 특정지위지는 지속적인 음모의 構成體에 의
한 범죄’라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定義와 使用例

우선 조직폭력과 관련된 유사한 용어부터 살펴보면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을
건달이라고 불러주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바꾸어 ‘달건’이라고 한다. 이 건달이란 말속
에는 俠氣가 배어나서라기도 하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풍류
기가 있어 마음에 든다고 한다. 이 건달에도 종류가 있는데 주먹 건달, 花柳界
건달, 라인 건달, 양아치 건달 등이 그것이다. 주먹 건달은 말 그대로 정통과 주
먹을 일컫고 돈보다 의리를 중시하고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는, 이른바 ‘건달정신’
을 가진 부류다. 이에 비해 화류계 건달은 연예계나 사창가를 기반으로 한 주먹
이고, 라인 건달이란 슬롯머신이나 카지노 등 도박계통에서 성장한 건달을 일컫
는다. 논두렁 건달로도 불리는 양아치 건달은 서민을 등쳐먹는, 말 그대로 동네

11) Albanese, Jay, *Organized Crime in America*,(2nd ed),Anderson Publishing co,
1989, p.5.

12) 조선훈, 「세계의 조직범죄」, (청목사, 1993), 12-13면.

양아치 수준의 조무래기 주먹을 일컫고 있다.¹³⁾ 그러나 일반인은 조직폭력배에 대해 깡패라고도 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의 ‘不汗黨’,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나 난봉을 부리다 신세를 망친 ‘破落戶’, 거지 왕초를 뜻하는 ‘꼭지단’, 조직폭력배들이 업소에 가서 종업원을 괴롭히려고 부를 때 쓰는 ‘아야’란 말이 대신 하기도 하고 기타 ‘한량’ ‘논다리’ ‘불량배’ 등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조직폭력배를 약하여 ‘組暴’이란 말은 최근에 나온 말로서 조폭 이전에 흔히 써오던 ‘깡패’란 말은 1957년 서울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야당집회에서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동대문파(두목 이정재) 소속 別動隊들이 난동을 부린 것을 계기로 한 때 ‘정치깡패’란 말로 유행되기도 하였다.¹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조직범죄란 마피아 형태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조직범죄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범죄와 조직폭력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무원 등과 결탁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 일정한 영속적인 조직의 다수 구성원이 그 조직의 위계질서 등 내부규범을 가지고 기동적으로 조직의 역할 분담하는 조직적 행위로써 범하는 여러 가지 刑事法 違反行爲”¹⁵⁾라기도 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를 범죄조직의 의미로 이해하고 조직범죄는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가 행하는 범죄”¹⁶⁾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범죄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엄격한 위계 질서하에 庇護勢力을 가진 다수의 구성원이 불법활동을 일삼는 단체’라고 보고 있다.

13) 조성식, “전설적 주먹 2인 연쇄 인터뷰”, 「신동아」, 2001, 3.

14) 노인수, 「달건 장밋했다 : 노인수 검사의 깡패사냥기」, (도서출판 민현, 1997), 14면.

15) 최명숙,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40면.

16) 정지운,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5면.

이에 반해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다수인에 의하여 범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조직단체의 활동으로서 행해져야만 하며, 또한 폭력의 행사 내지 폭력에 의한 위협을 기반으로 하는 것”¹⁷⁾이라고 하며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구성체의 활동으로서 행사되는 불법폭력을 말하며 그 구성체가 폭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¹⁸⁾이라고도 하고 있다. 또한 “폭력을 그 존립 및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지속적인 다수인을 구성원으로 한 모임체의 一員”¹⁹⁾ 또는 “다수인이 조직을 이루어 조직내부에 계층구조가 있고 지휘통솔이 가능한 지속적인 결합체로서 조직의 목적이 불법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에 있고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며 그 위반형태는 自然犯 뿐만 아니라 法定犯도 포함된다”²⁰⁾고 定義내리는가 하면 “다수인에 의한 위계적 조직체로서 불법적 활동에 의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고 비호세력을 만들기 위해 부패권력을 이용하는 범죄 유형”으로 정의하고도 있다.²¹⁾

현행 형법은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는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범죄단체조직과 그 죄를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을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할 공동 목적하에 이루어진 지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히 다중의 집합과는 달리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²²⁾라고 判示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이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

17) 백성일,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1990, 6), 196면.

18) 김영룡, 「조직폭력사범의 수용실태와 대책」, (교정, 1992, 6), 100면.

19) 노인수, 앞의 책, 17면.

20) 윤광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사례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7면.

21) 최익서, “조직범죄의 수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면.

22) 大判 1981. 11. 24. 81 도 2608.

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죄조직과 조직원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각 구성원이 지위나 직책이 명확한 지위체제 또는 통솔체제를 갖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계속성과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였더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구성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³⁾라고 判示하여 범죄단체의 조직을 확실히 하고 있다.

5. 本論文의 定義와 使用例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직범죄와 우리가 통상 지칭하는 조직폭력과 혼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범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진한 탓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유형중에 소매치기, 도박, 인신매매, 마약, 조직폭력, 매춘, 고리대금업 등 많은 유형이 있으나 이중에 조직폭력에 의한 피해가 어느 조직적인 범죄보다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이며 타 범죄조직보다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범죄하면 으레히 조직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조직폭력은 조직범죄의 한 유형이며 그 자체가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므로 일반적인 조직범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그러나 여기서 논하는 조직폭력 집단은 외국의 범죄조직(마피아·야쿠자·三合會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범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행하는 폭력은 범죄를 위하여 행하는 많은 수단 중 특징짓는 요소로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 일 뿐 폭력만을 사용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차이점이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조직폭력과 외국의 조직범죄

23) 大判 1987. 10. 13. 87 도 1240.

24) 점승헌,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997, 130면.

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조직폭력을 '범죄단체의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할 지라도 일정한 규모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을 규율하는 統率體制와 綱領을 가진 집단이 주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정의 내려 사용코져 하며 외국 조직범죄집단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第 2 節 組織犯罪의 特性과 類型

1. 組織犯罪의 特性

1) 外國의 경우

조직범죄의 정의나 활동영역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조직범죄의 특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수 없겠지만 그 중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형사사법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범죄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 ① 불법적 수단에 의한 합법적 목표의 추구나 불법적 행동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공조를 요하는 陰謀的 활동이며,
- ② 권력과 신분의 확보도 동기 요인이 되겠지만, 불법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확보에 조직범죄의 주요 목적이 있다.
- ③ 활동은 불법적 용역의 제공에 국한되지는 않고,
- ④ 위협, 폭력, 매수 등 약탈적 전술을 구사한다.
- ⑤ 경험, 관습, 관행상 조직범죄는 조직구성원, 관련자, 피해자 등에 대한 훈육과 통제가 매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다.²⁵⁾

또한, *Abadinsky*는 조직범죄의 특성에 대해 8가지 포괄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 ①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으며, 일부 정치적 참여는 자신들의 보호나

25) 점승헌, 앞의 책, 125면.

면책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비이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② 매우 위계적, 계층적이다.
- ③ 조직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
- ④ 조직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거의 영구적일 정도로 영속적이다.
- ⑤ 목표달성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불법적 폭력과 뇌물을 활용한다.
- ⑥ 전문성 또는 조직내 위치에 따라 임무와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 되고 전문되었다.
- ⑦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관료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지역이나 사업분야를 독점한다.
- ⑧ 합법적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규칙과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²⁶⁾고 하였다.

*Haskell*과 *Yablonsky*는 5가지를 조직범죄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 ① 大企業이나 軍과 유사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범죄집단이 구성원 상호가 파트너로서 기능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
- ② 통상 武力을 사용하거나 武力으로 위협한다.
- ③ 기업운영, 인사관리, 정치인과 경찰과의 관계, 그리고 이익배분 등에 관한 철저한 계획을 한다.
- ④ 비교적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법집행관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하거나 보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경찰이 특정범죄활동에 간섭하지 않게 하거나, 범죄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 조직범죄의 기업에 경찰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⑤ 관련된 집단의 지도자들끼리 상호 맞물려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²⁷⁾

이밖에 美聯邦捜査局(FBI)도 계층적인 구조(Hierarchical structure), 다양한 범죄대상(criminally diverse), 체계적인 조직구조(organizationally mature), 광범위한 활동(multijurisdictional)을 범죄조직의 특성으로 들고 있다.²⁸⁾

26) Abadinsky, Howard, *Organized Crime*, (Chicago, Nelson-Hall, 1990), pp.4-6.

27) <http://www.safekorea.co.kr/>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학자와 실무자들도 조직범죄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면 <표2>로 나타낼 수 있다.

<表2> 學者와 實務者에 따른 組織犯罪의 特性 分類

학자 특성	최명숙	정지운	정진수	김용우/최재천	장창호	박기준	조선희
인적 조직	○		○	○			
계층의 존재	○	○			○		○
불법적 활동 계획의 수행	○	○	○	○	○	○	
내부 규율		○	○	○	○	○	
경제적 이익추구		○	○	○	○	○	○
비호세력과 연계		○			○		○
광역성		○					
계속성			○	○		○	
수단의 다양화					○		○

자료 : 최진규,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9면.

<표2>를 보면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불법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내부규율이 존재한다는 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직범죄의 본질적 특성으로 看做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① 조직범죄는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다양하고 최소한의 위험부담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에도 관여한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범죄를 포함한 불법

28)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17면.

적 방법을 모두 동원함은 물론 합법적 영업활동도 영위한다. 특히 조직범죄의 간부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된 자금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 수단에 의하여 조성된다.²⁹⁾

② 불법적 활동계획의 수행이라는 점이다. 조직범죄는 물론 범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활동이 아닌 불법적인 활동의 수행이고, 그 활동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에 옮겨진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형법 및 특별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범죄조직 내지 폭력조직은 社會·經濟情勢의 변화에 교묘히 대응하면서 현행법규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³⁰⁾

③ 내부규율이 존재한다. 조직범죄는 다수인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활동이므로, 이러한 조직을 규율하는 내부규율이 필요하다. 범죄조직에는 일반 사회규범이나 법률보다 더 엄격한 내부규율이 존재하며 이 내부규율은 절대적·맹목적이며, 내부규율을 위반한 조직원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이 가해지지만, 내부규율을 지킨 조직원은 범죄조직 내부의 보상이 보장된다.³¹⁾ 이는 일반사회의 법규와 같은 내부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과 조직원의 행위에 대해 論功行賞과 處罰과 같은 사회보장과 징계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사회의 실정법에 의한 처벌보다 가혹한 조직 자체내의 처벌의 두려움과, 범행후의 사후보장제도는 범죄조직이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하고, 조직원이 범죄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며, 수사기관에게는 범죄조직을 분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있다.³²⁾

④ 인적 조직과 계층이 존재한다. 조직범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의해 범해지는 범죄로서, 조직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물적 및 인적 조직을 말한다. 범죄조직이 이윤 내지 재산의 증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물적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는 주된 특징을 이루는 것이 아닌 반면, 인적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³³⁾ 그러

29) 조선훈, 앞의 책, 17-19면.

30) 정진수,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6면.

31) 정지운, 앞의 논문, 14면.

32) 김준규, 「조직범죄의 효율적 수사기법」, (대검찰청, 1993), 12면.

33) 최명숙, 앞의 논문, 40면.

기 위해서 다수인의 존재가 필요하며, 적어도 조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에 의한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체제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2인 또는 3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5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³⁴⁾

그외 附隨的인 特性으로

- ① 비호세력과의 連繫性을 들 수 있다. 이 세력에는 정치적 비호세력, 업소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비호세력, 금전 등의 매수로 독점이나 면책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무원과 같은 관료적 비호세력 등이 있다.³⁵⁾
- ② 계속성이라는 면에서 조직범죄집단은 경험, 관행, 실행 등에 의하여 관계인이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구성원을 훈련·양성시킬 수 있어 永續性이 있다.³⁶⁾
- ③ 수단의 多樣性이라는 면에서, 조직범죄집단은 合法·不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 ④ 廣域性은 범죄조직의 경우 다수의 조직원, 경제적인 뒷받침 등으로 그 활동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³⁷⁾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성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외국의 조직범죄집단과는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환경과 국가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조직의 생존과 확장을 위하여 정치세력에 철저하게 기생하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1952년 부산정치과동, 1955년 대구매일신문 난입사건, 1957년 서울장충단공원 민주당 시국강연회 폭력사건, 1960년 고려대생 습격사건, 1969년 신민당 총무에 대한 초산세례사건,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 난동사건, 1987년 이철승

34) 정진수, 앞의 책, 26면.

35) 정지운, 앞의 논문, 17-18면.

36) 이러한 특성은 거의 모든 조직이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며 조직범죄집단만이 고유한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7) 최진규,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0면.

의원 내각제 발원 파동시 신민당사 농성사건,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 사건) 등에서 정치세력과 조직폭력과의 연계를 보여줬다. 이와 같이 정치세력과 조직범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강력한 조직을 필요로 하고, 조직범죄는 이들과 연계하여 유사시 조직을 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쟁기업의 타도, 타기업의 흡수나 합병, 회사내의 경영권 확보, 공사 등의 낙찰, 노사분규의 강제적 해결 등을 위하여 폭력조직을 이용하게 되고 조직은 자금확보 측면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③ 건설업 분야에 그 세력을 두드러지게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낙찰공사 대금에서 일정비율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 조직범죄는 또한 유흥업계 주변에 기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나 자릿세 등을 이유로 금품을 갈취하고 불법한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하여 폭력으로 일을 해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조직을 유지한다.
- ④ 조직범죄의 활동영역이 공갈이나 갈취, 협박 등 폭력을 주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적 조직범죄와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고, 돈세탁이나 마약거래, 투자 컨설팅이나 파이낸스 등의 각종 금융업, 심부름회사의 간판을 건설사 정보업에도 관여하는 등 그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³⁸⁾

2. 組織犯罪의 類型

조직범죄의 유형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들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유형을 외국조직범죄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38) 허경미, 앞의 논문, 83-84면.

먼저 *Albini*는 조직범죄를 네가지 기본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 ① 사회적인 것으로 테러나 과격한 사회운동과 같은 政治的·社會的 組織犯罪
- ② 직접적인 개인적 이득을 노린 집단범죄로서, 청소년 갱이나 성인 갱집단들에 의한 강·절도와 같은 금전추구위주의 掠奪的 集團犯罪
- ③ 심리적 만족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폭주족, 갱과 같은 集團內部指向의 조직범죄
- ④ 무력이나 위협, 협박 등을 사용하여 불법활동에 참여하는 지속적인 범죄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대중의 수요가 큰 불법활동에 참여하는 지속적인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공공의 수요가 큰 곳에 불법용역을 제공하며 정치적 부패를 통한 보호 및 면책을 확보하는 등의 신디케이트범죄(*syndicate crime*)로 나누고 있다.³⁹⁾

그리고 일부학자들은 소규모 갱(*Gang*)으로부터 거대한 신디케이트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조직범죄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조직범죄의 고전적 패턴’으로서 단순한 형태가 아닌 전략적·전술적 범죄(예컨대 뇌물공여, 강탈, 폭행 등)로부터 ‘불법적 비즈니스와 활동’단계를 거쳐 ‘합법적 비즈니스’, 이어서 ‘거대한 비즈니스’로의 점차적 이행을 묘사한다. 전략적·전술적 범죄유형으로서는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며 흔히 전략적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성격의 방화, 폭행, 강탈, 살인, 갈취, 뇌물, 공무원 매수 등을 들고 있다. 다음의 불법적 비즈니스와 활동에는 숫자조작에 의한 복권, 스포츠내기 및 도박, 이와 관련된 고리대금업, 노조관련 이득 갈취, 마약불법거래, 매춘업, 포르노그라피, 장물거래, 비디오 테잎 등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불법주류유통, 그 외에 자동차거래, 제과업, 섬유업, 건설업, 호텔업, 자판기, 트럭운수업, 바(*bars*)와 레스토랑업 등을 둘러싼 조직범죄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음 소규모사업에서 성공하게 되면 대규모사업에 침투하여 금융업, 건설업, 유흥업, 부동산업 등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직접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하여 최종단계에 남게되는 것은 정부이며 정부까지도 각종 수단과

39) *Albini, Joseph, The American Mafia : Genesis of a Legend*,(New York, 1971), pp.38-48.

방법을 동원하여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⁰⁾

위에서 살펴본 *Albini*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직폭력범죄는 미국의 조직범죄 집단과는 규모면과 범죄의 성격상 차이점은 많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직범죄를 논할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신디케이트범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학자들의 분류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 조직폭력집단의 유형은 과거 전통적인 ‘不法的 비즈니스’ 단계에서 벗어나 ‘合法的 비즈니스’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는 외국범죄조직처럼 ‘거대한 비즈니스’로 나가기 위한 전단계로 보인다.

외국의 분류는 범죄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활동구역, 자금취득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규모면으로 분류할 때는 대형조직, 중형조직, 소형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의 기준은 조직원수, 자금면, 관할 영향력, 동원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구분되어야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대형조직으로는 신우회, 일송회, 화랑신우회, 호국청년연합회 등을 꼽고 있으며 통상 조직원은 100명이상으로 치고 있다. 그리고 중형조직은 조직원 수가 100-50명선으로 적어도 1개 시·도의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이며 소형조직은 조직원이 50명미만으로 지방의 소도시나 대도시의 주변을 활동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⁴¹⁾. 둘째, 지리적 활동구역을 기준으로 나눌 때는 지역조직과 광역조직으로 나누고 셋째, 자금취득 형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탈형, 기생형, 공생형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⁴²⁾ 그렇다고 위 분류 방식만으로 조직폭력집단을 분류한다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범죄는 위 분류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갖고 수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코 분류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40)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18호, 1994, 15면.

41) 홍준표, “조직폭력의 수사상 제문제점”,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대검찰청, 1993), 315-317면.

42)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0-31면.

第3章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變遷 過程

第1節 時代別 變遷過程

우리 나라의 조직폭력의 起源은 日帝時代나 解放 以後라고 볼 수 있다.⁴³⁾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左右의 정치적인 대립과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였기 때문에 ‘주먹’을 무기로 패거리를 이룬 집단들이 나뉘어 서식처를 찾아다니며 주로 유흥가 주변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조직화된 깡패’가 폭력조직의 元祖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직들은 정치변혁 때마다 각각 특이한 시대별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국면을 필요로 할 때마다 사회정화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실시되었지만, 더 큰 목적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치적 정당성의 부족을 해소하고 합법성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1. 高麗時代

폭력배를 악소 또는 악소배(惡小輩)라 불렀다. 고려 말기는 이 악소배들의 황금시대로 으스스한 모퉁이에 어울려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패물 등을 빼앗아 달아나거나 酒幕에서 공짜술을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을 일삼았다. 고려사 鄭國儉傳에는 당시 권신들의 아들과 조카들이 악소배에 끼어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충숙왕의 府院君이요 政丞이었던 권준의 子弟도 악소로 검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악소들은 權臣간의 정치과위를 표현하기 위해 이용한 예도 있으며 이성계의 외손자인 三善, 三介도 악소두목으로 북쪽 邊方을 橫行하였다고 高麗史와 龍飛御天歌에 나와있다.⁴⁴⁾

43) 정진수, 앞의 책, 41면.

44) 조선훈, 앞의 책, 143-144면.

고려 武臣政權時代에는 경대승이 정중부의 학정에 의거하여 정권을 잡은 후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사병 집단으로 힘께나 쓰는 건달패 위주로 도방을 설치, 都房정치를 하였는데 개성에서 천민들을 모아 ‘都房’이란 사병 집단을 만들어 정치에 이용하고 탈법적인 행위 등을 자행했으며 賤民(역정, 진노, 화척, 백정, 재인, 노비 등)들이 노예해방을 부르짖는 등 亂을 자주 일으켰다.⁴⁵⁾

2. 朝鮮 時代

조선 영조 이후 일부 前科者들은 서울 가산(지금의 을지로 6가, 동대문 운동장 부근)에 모여 살면서부터 거지 집단지가 형성되었고 이 집단의 두목을 ‘꼭지단’이라 하고 勢道家들과 野合하여 政敵에 대한 염탐과 첩보원 구실을 하였으며 개화기 때에는 독립협회 가두연설을 보수파에서 동원 연설을 방해하곤 하였다. 수양대군때는 한명회의 건의에 따라 한양 ‘건달패’ 두목인 홍윤성을 정권 찬탈에 이용했다는 설이 있으며, 조선 말기에는 대원군이 野人으로 있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양에 있는 市井雜輩들(건달패)과 어울렸으며 정권을 잡은 후에도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폭력배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史料가 없어 파악할 길이 없으나 역사에 보면 불한당, 불량배, 한량, 건달 등으로 불리는 폭력배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직폭력이란 개념이 발생한 시점을 일반적으로 일제 식민지 이후 일본의 浪人과 야쿠자들이 당시 한양 등지에 상륙한 시기를 그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⁴⁶⁾

3. 日帝 強占期 時代(1930-1945)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인 테라우찌는 武斷統治를 감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일본경찰, 헌병의 배경을 업고 야쿠자들이 대거 한양에 들어와 활동하였는데, 이들이 당시 상권이었던 명동, 종로일대에서 조선상인들을 상대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

45) 진단학회, 「한국사 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486-487면.

46) 서울지방경찰청, 「한국 조직폭력 실태」, 1999. 13-14면.

작하자 이에 맞서는 조선의 조직폭력배도 서서히 태동하였다. 이들은 왕십리 서대문을 중심으로 구마적, 신마적이라 불리는 조직들이 나타나 조선 상인들의 자율적 보호를 위해 야쿠자들과 대결을 하곤 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일본주먹과 조선주먹간의 대결양상이 심화되면서 종로 우미관패의 두목 김두환과 서대문패 두목인 김기환 등이 주축이된 조선 주먹패가 형성되는데 이들을 가리켜 일명 ‘反日 주먹’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착취의 일환으로 東洋拓植會社를 설립하여 同會社의 일본인 신변보호 및 조선인 협박 수단으로 일본 야쿠자 두목인 기무라, 하베 등 수십명의 야쿠자 조직원을 조선으로 끌어들이며 명동, 충무로 등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시켰으며, 조선의 김두환은 종로구 관철동 국일관을 중심으로 한 일명 김두환 사단과 일본 야쿠자 두목 하야시간에 조선 상권을 두고 치열한 세력 다툼으로 집단폭력이 난무하였다. 당시에 이들은 시장이나 유흥가 장사꾼들이 모이는 나루터 등지에서 사업가나 장사꾼들로부터 공갈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을 관리하여 나갔고 이를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4. 第 1・2共和國 (1946-1961)

1946년대부터 이들 폭력조직들은 白骨團, 땃벌레, 민중자결단, 대한민주청년단으로 불리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理念的 대립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대항하는 ‘反共주먹’으로 일대 변신을 꾀하였다.

政府樹立 이후 左翼勢力들이 사회요소에서 약탈·방화 등을 일삼자 미군정 당국과 정부에서는 종로파 두목인 김두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한민주청년단’ 감찰부장직에 임명하고 좌익의 철도 총파업 현장에 쳐들어가 습격하는 등 우익 폭력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때부터 폭력조직이 꺾일 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50년대는 이정재의 고향후배이자 동대문파 부두목 유지광이 당시 자유당의 집권을 보좌하고자 ‘三友會’를 결성하여 주먹세계의 전국 제패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항하는 폭력조직으로 이북출신으로 구성된 명동파(이화룡)가 명동에서 결성된다. 이후 三友會와 명동파간에는 세력 다툼이 심하였고 이때에는 미군 원조물자 공급노선 및 미군PX의 공급 루

트를 장악 밀수 등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등 폭력조직 자금원의 다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주요폭력조직들의 동향을 보면 1960년 3월 자유당 정권의 3·15부정선거와 독재에 학생들이 항의하여 고려대학생들이 쫓기하자 이정재 휘하 깡패 100명이 피습하는 등 정치깡패로 변신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부산에서는 6·25피난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때 칠성파와 20세기와 폭력조직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불량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행여나, 케세라, 오케이 등이 조직간 다툼이 빈번하였으며 군소 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민들의 생계터전이나 유흥가 등에 기생하며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5. 第 3共和國(1961-1972)

5·16 군사구테타로 국가권력을 잡은 혁명군은 ‘국가재건위원회’를 결성하여 반국가·반민주적 행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고대생 피습사건, 장충단 공원 민주당 시국연설회 폭력사건 등 정치적 테러와 시국사건에 계획적으로 개입했다는 동대문과 이정재, 이화수를 처형하고⁴⁷⁾ 구 정권하의 소위 깡패는 물론 걸인, ning마주이, 소매치기 등에 대해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⁴⁸⁾ 또한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나는 깡패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내행진을 하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뜻에서 ‘국토건설단’을 설치하여 국토건설에 종사케 하기도 하였다.⁴⁹⁾ 이때 소탕되거나 잠적했던 이들은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다시 명동을 중심으로 명동파, 이화룡의 조직원이었던 신모가 신상사파를 결성하여 폭력배들이 다시 규합,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는데, 당시 서울에는 신상사파, 삼일당파, 청량리파, 호남파(조모), 번개파 등이 활동하였고, 광주에서는 폭력조직이 생성단계를 맞이하면서 대호파는 구오비파, 신오비파로

47) 정지운, 앞의 논문, 107면.

48) 總檢學 13,387명, 軍裁判附 584명, 地檢少年院送致 969명, 國土建設就業 478명, 拘留 90명, 移牒 214명, 保護 142명, 釋放 10,910명이었다.

49) 강제노역에 대한 위험 논란성이 있었다.(정지운, 앞의 논문, 132면; 정진수, 앞의 책, 44-47면)

갈라지고 동아파는 서방파, 대인동파, 시민파로 나뉘져 치열한 관할 구역확장을 위한 세력다툼이 있었다.

1971년 1월 1일 명동 사보이 호텔에서 신상사파에 대항하여 서울 진출을 노린 범호남파 소속 조모가 신상사파 행동대원 김모 등을 야구방망이로 난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범호남파는 번개파(박모), OB파(이모) 양은이파(조모), 서방파(김모) 등이 폭력조직을 결성하였고, 전주파(이모), 목포파(강모) 등이 서울 진출을 시도하였다.

6. 第 4共和國 (1972-1980)

이시기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조직범죄가 증가하고 범죄규모도 대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⁵⁰⁾

維新(1972. 10. 17) 직후 정부는 폭력집단을 포함한 ‘사회악 처단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호남파는 두목 등 간부 9명이 구속되었으나 박모가 세력을 재규합하여 신상사파와 본격적인 대립을 하기 시작하였다. 신상사파와 호남파간의 대립은 명동의 모호텔 나이트 클럽 영업부장직을 둘러싼 싸움으로 시작되었으며, 호남파는 1975년 1월 2일 생선회칼과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신상사파를 급습하여 승리하였다. 이 싸움을 계기로 호남파가 명동에 진출하여 대세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 후 서울을 장악한 호남파는 오모, 조모를 중심으로 하는 오종철파와 박모, 오모, 김모를 중심으로 하는 번개파로 분열되었다. 박모의 번개파에 소속되어 있던 김모는 1976년 3월경 무교동 E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오모를 회칼로 난자하여 불구로 만들어 버리고 박모, 오모 등을 선배로 하여 서방파를 결성하였다. 이때 조모는 오종철파의 실질적인 두목이 되었다.⁵¹⁾ 1976년 6월 서방파는 호남출신 조직폭력배의 공급 루트인 광주시내 중심 유흥가인 충장로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광주OB파를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양범죄 조직간의 보복이 거듭되었다.

이들의 싸움은 소위 ‘칼잡이’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싸울때 종전의 쇠파이

50) 진수명, *현대사회와 범죄(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세)*, 2000, 3, 31.

<http://my.dreamwiz.com/yena/docs/kgu05.htm>

51) 강지원, 「조직폭력의 발호실태와 대응현황」, (법무연수원, 1992), 138면.

프, 체인, 각목 뿐만 아니라 회칼, 낫, 일본도, 도끼, 쇠꼬챙이 등으로 무장하여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兩犯罪組織의 대립은 오종철과의 조모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1978년 11월 10일 서울, 광주, 대전, 순천 등 지방의 범죄조직까지 규합, 독자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양은파를 만들었다.⁵²⁾

광주지역의 신OB파 부두목인 이모는 자기 휘하의 행동대장 안모, 원모, 윤모 등을 시켜 신OB파의 두목 박모를 살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패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서울로 도망하여 OB파를 결성하였다. 이모는 초기에는 큰 마찰없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형성해 나갔으나 그 뿌리가 광주의 대호파(OB파)였기 때문에 동아파 출신인 조모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간의 대립을 거치면서 서방파, 양은이파, OB동재파 등 속칭 3대 패밀리가 形成되었다.⁵³⁾

7. 第 5共和國(1980-1987)

1980년 8월 18일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위원회(국보위)'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三清教育'⁵⁴⁾ 실시로 폭력조직의 두목들과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피신, 지하로 잠적하였다. 이때 삼청교육대 사업을 포함한 사회정화운동은 국가에 의한 범죄통제를 증대시켰다.⁵⁵⁾ 이 무렵부터 1984년말까지 총 38,259명이 삼청교육을 받았다.

당시,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형 폭력조직의 대형화 추세로 각종 이권사업, 유흥가 주도권, 정치폭력, 도박장 개설 등으로 자금을 마련코자 폭력조직간 다툼이 잦았다. 1985년도는 전국의 폭력조직이 가장 번창하던 시기로 폭력조직의 발호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때 전국적인 조직으로는 OB파, 양은이파, 서방파, 목포 장전식파 등이 발호하여 서진 룬싸롱 사건 등 큼직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때의 서울진출 폭력조직을 살펴보면 전남에서는 汎호남파, 번개파, 동아파, 양은이파, 서방파, 보성파, 순천시민파, 목포파, 동화파, 맘보파, 전북은 전주파, 군산파,

52) 강지원, 앞의 책, 138면.

53) 최준규, 앞의 책, 28면.

54) 軍·檢·警은 전국에서 57,561명을 검거 그 중에 죄가 重한자는 軍裁判附 또는

檢察送致, 輕한 者는 軍부대 수용, 순화교육을 실시하였다(강지원, 앞의 논문, 142면)

55) <http://my.dreamwiz.com/yena/docs/kgu05.htm>

이리배차장파, 나이트파, 88월드컵파, 배차장파, 부산은 칠성파, 영도파, 신21세기파, 대전은 진술파, 옥태파, 수원은 수원파, 남문파, 북문파 등이었다.

8. 第 6共和國 以後(1987 현재)

1980년대 후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과거 또는 당시의 폭력범죄조직원들이 연계된 전국적 규모의 범죄조직을 결성하거나, 범죄조직간 상호연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우익활동이나 사회봉사 등 합법적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폭력범죄조직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했다.⁵⁶⁾

1988년 후반부터 1989년 초반에 지방의 범죄조직을 흡수통합 또는 연합한 이모계의 호국청년연합회, 서방파, 번개파의 연합조직인 김모의 신우회, 목포파, 신OB파와의 연합조직인 一松會 등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들이 결성되면서 광역화 현상이 두드러졌다.⁵⁷⁾ 이들은 그 범죄조직을 구태여 비밀에 붙이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사회봉사 또는 사회기여를 위한 단체인 것처럼 내세우는 등 점점 지능화되어갔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는 호국청년연합회이다.

이 조직은 1987년 7월 7일 이모가 교수, 실업인, 체육인, 사회사업가, 재외교포, 학생대표 등 각계인사를 규합, 80여명의 발기인으로 '護國靑年聯合會'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취지가 친목도모와 사회봉사에 있음을 밝히면서 행동강령도 갖추고 있었다. 약 2천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전국의 각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두고 산하에는 학생 3천명으로 구성된 호국학생연합회를 두는 등 대규모 범죄조직이었다. 그들은 1987년 한강고수부지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폈고 명동성당에서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1989년 4월에는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관련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에 관해서는 당시 평민당을 성토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정치적인 색채를 띄어갔다. 그러나 이모는 1987년 4월 20일부터 5일 동안 당시 통일민주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조직원을 동원, 서울, 수원, 인천에서 열리던 지구당 창당대회장을 습격한 소위 '용팔이 사건'을 배후에서 지

56) 정진수, 앞의 논문, 51-52면.

57) 권순택, '폭력조직', 신동아, (1990, 3), 544면.

원한 사실이 드러나 1990년 검거되기도 했다.

1990년 10월 13일에는 정부적 차원의 대범죄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은 제6공화국 출범이후 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대책임과 동시에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류, 강·절도 등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이었다.

다른 특징으로는 폭력범죄조직이 광역화하면서 활동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졌고 關與하는 활동영역도 넓어졌다. 또한 그 자금원도 다양해지면서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폭력범죄조직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상부조직원과 하부조직원의 차이가 점차 커졌고 정치권력이나 경제세력과 연계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또한 폭력범죄조직은 국민들의 해외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LA지역에서 한국계 폭력범죄조직이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 마카오 국제도박에 관여하면서 홍콩의 범죄조직과 연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폭력단과도 연계되어 조직의 국제화를 시도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94년에는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출이파 행동대장 오모(23) 교살사건, 1994년 12월 4일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N호텔 앞에서의 대홍파에 의한 살인극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⁵⁸⁾

199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직폭력집단의 제도화되었으며 이전에는 유흥가 주변에 기생하며 칼부림으로 영역다툼을 벌이는 깡패 위주의 조직폭력이 업종별, 업체별 지배조직으로 변신하였고 대도시 쓰레기 불법매입사업, 무허가촌 철거사업, 정부발주 공사 입찰 등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합법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들을 기업화하고 기업인, 정치인, 종교인, 주요 국가기관 간부 등으로부터 다양한 비호세력 구축하였다.⁵⁹⁾

文民政府 출범이후 범죄소탕작전을 4차례나 실시하여 전국의 조직폭력 대부분을 검거하였고 폭력조직과 연계된 자금원인 호텔 카지노 및 '빠친코' 성인 오락실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검은 자금과 연결된 정부의 고급관료들을 대거 구속⁶⁰⁾하는 등 폭력조직과의

58) 정지운, 앞의 논문, 114-116면.

59) <http://my.dreamwiz.com/yena/docs/kgu05.htm>

60) 조선일보, 1993년 5월 5일.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해방이후 폭력조직의 자금원이었던 커넥션을 차단시키기도 하였다.

1999년도에는 뚜렷한 경기회복 및 유흥업소 영업시간 폐지 등 조직폭력배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國民政府 출범 이후에는 폭력조직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폭력조직이 거의 와해 되었으며 대형화 추세에서 탈피한 小組織形態로 바뀌었다. 평상시 10명이하의 소규모 조직을 유지하며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고 群小組織끼리 상호연계·협력하여 필요할 때에는 긴급연락망으로 연락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모이는 광범위한 ‘戰術的 提携’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감되었던 폭력조직 간부 및 조직원들이 대거 출소, 이들을 중심으로 침체되었던 폭력조직의 재건 및 세력의 확장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러한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금원도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은 또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며 전통적인 유흥업 갈취, 건축업 진출, 도박장 개장, 연예계 갈취, 유흥장업 운영, 경마조작 개입, 주류업 판매개입, 상가분양권 갈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벤처기업 운영, 사채업 운영, 금융업 진출, 증권시장 주가 조작 개입에까지 기업적·합법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第 2 節 地域別 生成 및 變遷 過程

우리나라의 폭력조직은 지역별로 조직의 수와 크기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런 폭력조직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그 대상을 한정하여 효율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제와 수사방법 그리고 형사정책을 결정하여 국가의 대응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1. 서울 및 首都圈 地域

朝鮮 初期 한양의 인구는 약 10만여명 이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서울(경성)의 인구는 약 33만 여명으로 증가하여 1946년경에 약 126만여명에 이르렀고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

시로 되면서 인구는 약 140만여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조선 末期에는 서울이 京城으로 불리었으며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전체인구의 1/4 가량이 서울에 거주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항상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전국의 폭력배들이 경성에서의 활동이 전국구 폭력배로 통하였으며 당시는 “우미관을 장악하는 자가 조선을 지배한다”하여 전국의 폭력조직들이 京城 진출의 기회를 노려왔었다.

서울 폭력조직의 생성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0년경부터 서울 왕십리, 서대문을 중심으로 조선 주먹의 대명사로 불리던 舊馬賊 고희경 대 종로 관철동을 중심으로 조선학생 주먹의 대명사로 불리던 하는 新馬賊 엄동욱의 조선상인들의 자율적 보호를 위하여 일본 야쿠자들과 대결에서 시작하였고, 1940년경에 들어서면서는 명동, 종로를 중심으로 종로파에 김두환, 일본폭력조직에 하야시패 등이 대결양상을 이루어 서울 상권의 중심지인 명동, 종로를 사이에 두고 폭력조직간에 세력다툼이 치열하였다.

서울은 해방 이후에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심지의 역할을 계속하여 왔으며 폭력조직 또한 발호와 대립양상을 계속하여 명동파 이모, 동대문 사단 이모 등 폭력조직 10여개파가 난립 대결을 하여 오던중 서울 최대의 상권지역인 동대문 시장을 장악한 이정재 등이 중심이 된 정치폭력조직인 일명 ‘東大門師團’이 동대문과 명동, 종로 일대 등을 사실상 장악하고 활동하였다.

1945년 이후 폭력조직 양상은 종로파 김모, 명동파 이모, 동대문파 이모 등 3대 조직과 군소조직인 종로3가 아오마스, 서대문 양키, 광화문 장여빈 사단, 중앙극장 정팔사단, 스카라 극장 안소위 사단, 남대문 시장의 엄복만파 등이 서울시내 일대를 장악하였는데 이들 조직들은 1946년대부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대립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반공주먹으로 일대 변신을 꾀하게 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종로파 김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6·25 동란때는 잠복기간에 속한다.

1960년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서울 최대의 폭력조직인 신상사파도 국내 최대의 상권지역인 명동, 종로, 무교동 일대를 장악하였다가 1970년대 신상사파가 전남 광주 등지에서 상경한 범호남파 폭력조직에 의한 1971년 사보이 호텔 습격사건으로 몰락하면서 서울최대의 상권인 명동, 종로, 무교동 지역관할권을 범호남파에 내주었다.

1975년에 들어서며 조직폭력 3대 패밀리라 부르는 서방파 김모, OB 김동재파 이

모, 양은이파 조모가 서울 명동 종로 무교동 일원 장악, 폭력조직간의 치열한 다툼을 하면서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소비향락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유흥업소, 호텔, 오락실 등이 호황을 누리면서 서울 최대상권인 강남 진출을 노리고 상경하는 전국의 폭력조직간 다툼이 시작되면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유흥업소 등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흥업소를 직접 경영 또는 동업으로 참여하는 기업형태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형태를 띄었으며, 전국적 조직규모로 확장하고 상호 연대를 통해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 당시 폭력조직들의 전국 규모의 연대관계를 살펴보면 이모의 護靑聯, 김모의 신우회, 전북 이리 배차장과, 두모·김모의 일송회, 부산 칠성과 두목 이모의 화랑신우회 등 폭력조직의 대형화, 광역화 추세를 보이며 서울 강남 일대의 대형 유흥가 등의 이권장악을 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1990년대는 '犯罪와의 戰爭'으로 전국 조직폭력의 두목급 30여명이 구속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폭력조직의 와해가 가속화되면서 조직원들이 지하로 잠적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1993년에는 조직폭력의 자금원이었던 호텔 카지노 및 성인오락실 등을 집중 단속하고 카지노계의 대부 등이 검거됨으로써 대형폭력조직은 외면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2001년 현재 서울의 폭력조직은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감되었던 조직원들이 출감하면서 재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예전처럼 조직적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고 10-30명 단위로 재개발, 사채, 사설 경마, 유흥업소, 건설업, 사채업, 도박, 금융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변신하고 있는 등 이권에 따라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시대별로 생성된 폭력조직을 표로 나타내보면 <표3>과 같다.

<表3> 서울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지역 년도	중부지역 (중구, 용산, 남대문, 동대문등)	청량리지역 (청량리, 왕십리, 수유리, 미아리등)	영등포지역 (영등포, 관악, 마포, 신촌등)
1930년대	구마적, 신마적		
1940년대	김두환		
1945년대	동대문과, 종로3가과, 서대문과, 광화문과, 명동과, 충양극장과 스카라극장과, 종로과, 소공동과	왕십리과	마포과
1950년대	삼우회(동대문, 종로3가, 서대문, 광화문) 명동과(대동강동지회, 압록강동지회, 스 크라극장, 시라소니)		
1960년대	신상사과	국필이과(청량리과)	영등포삼일당
1970년대	호남과, 번개과, 양은이과, OB동재과, 서방과, 순천시민과		중앙동과, 남부동과
1981년도	맘보과		북부동과
1982년도	진수과, 일국과	까불이과	이글스과
1983년도	신배차장과		구로동과, 아성과 허리케인과
1984년도	장진석과	홍릉과	신정회
1985년도	양아치과	한영과	거인과
1986년도	이민석과, 백곰과, 인철과, 대전사거리과	진수과	딱부리과, 산이슬과, 일남이과
1987년도	차광이과, 행만과	청용과, 삼환기획과	대들보과, 신촌로타리과
1988년도	경마장과, 영동애기과, 장성과, 화양과, 잡실재근이과	현옥이과, 훈이과	진주나이트과, 소방서과, 전성과
1989년도	이리와, 만수과, 수진과, 김제읍내과, 경호과, 원석과, 밤서방과	상택이과, 백승화과, 장안과	아이들과, 시흥시장과, 순천과, 선우회, 방배동과
1990년도	다윈과, 서울동아과, 경마장과, 신학동과, 김제성산과	영광과, 종근과 인디안과, 답십리과	보성과
1991년도	보량과		혜연과
1992년도	대현과, 신송정리과, 성일과, 해성과, 부성이과, 신연병장과, 텍사스과, 정읍과	연호과, 청문회과, 박개과	레원이과, 상암동과
1993년도	태풍과	조희장과	병도과
1994년도	고창모양과, 용기과, 대흥동과	대현과	현수과, 북부동과
1995년도	명진과	구로동과, 용산이과	홍릉과, 성호과, 영성과 신중항동과, 도용과, 비마과, 막내과
1996년도	창신동과	신상봉동과	시흥시장과
1997년도	용수과, 창식이과	브라질과, 까마귀과, 산이글스과	청운과, 쌈지과
1998년도	시연과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2. 仁川·京畿 地域

1) 인천

인천은 1968년 高速道路 開通과 1974년 電鐵 開通 이전까지만 해도 교통망 부족으로 인접한 수도권 지역과 교류가 활발치 못하여 자생 조직간 세력다툼으로 성장하였다. 해방 직후까지는 체계적인 조직이 없었고 단지 생계유지형과 좌익성향 폭력배들이 발호하였으며, 6·25 당시에는 최모가 결성한 장터과를 시초로 조모가 모모야과, 김모의 미야마찌과, 정모의 창여동과, 박모의 송림동 중앙시장과, 박모의 하인천과, 전모가 결성한 화수동과가 있었고 그 후 1960년대 말까지는 群小組織으로 발호하였으나 5·16혁명 이후 瓦解되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는 김모가 신포동과를 결성 활동하다가 조직원들이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와해되었고, 이후 1980년 신군부에 의한 三清教育⁶¹⁾ 실시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은 발호치 않았다.

1985년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3대 웨밀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타지역 조직이 인천지역으로의 진출을 저지키 위해 최모가 꼴망과를 결성하였고, 부평지역은 1980년대부터 부평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최모가 시장과, 유모가 신촌과를 결성 세력다툼을 하다가 신촌과 유모가 세력을 장악하여 부평 식구과를 결성하였다. 1988년에는 송모가 주안과, 오모가 금강산과, 김모가 석바위과를 결성 세력다툼을 하였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꼴망과, 선장과, 주안식구과, 신주안식구과, 석바위과, 신촌과, 시장과, 석남식구과, 연수과 등 총 9개 조직에 16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61)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삼청5호'라는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조직폭력배가 가장 많았고, 노조간부, 비판적 인사, 반정부 재야인사, 연예인 등의 피해가 많았다. 김종혁, "조직폭력배 : 그 계보와 규율", 월간중앙, 1991, 1. 293면.

2) 경기도

수원에는 1970년에 최모가 수원파를 결성 수원의 남문, 북문, 역전 등 시내 중심으로 관할 구역을 분할하여 상가 및 유흥가 주변에서 서식하였다. 그후 1980년 2월경부터는 하부조직이 다시 독자적 계파를 형성하여 상호 투쟁을 일삼아 오던 중 차모, 홍모를 중심으로 남문파를 결성하여 권선구 남문 일대에서 서식하였으며 1983년 12월경에는 김모가 북문파를 결성하여 북문 일대에, 1989년 1월에는 김모를 중심으로 역전파를 결성하여 권선구 매산로 일대의 역전 주변에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 왔다.

현재 수원 지역에는 남문파 70여명, 북문파 50여명, 역전파 3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안양에서는 폭력패거리들과 불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AP구파, AP신파, 타이거파, 구사거리파가 그 대표적인 조직이다. 1961년 4월경 장모 등 80여명이 AP(April phoenix-4월의 불사조)파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하였으나 본질에서 벗어나 폭력조직으로 발전하였고 타이거파는 1977년 7월경 안양시 안양동 1번가에서 학교주변 불량배를 중심으로 김모가 16명을 규합하여, 친목단체로 활동하다가 조모가 두목이 된 후 변질되어 그 후 폭력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구사거리파는 1988년 6월경 안양시 호계동 주변 유흥가를 배회하던 최모 등이 40여명을 규합·결성하여 안양시 일원 호텔 빠친코, 나이트 클럽, 유흥가, 노래방, 당구장, 다방 등에 영업부장 등을 고용케하고 각종 이권 등을 장악키 위해 상호 대결을 벌여오다가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들 조직 두목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이 미미하였다. 현재 안양에는 위 4개 조직 약 13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군포시는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으며 전철이 개통되고 수도권과 인접한 신흥도시로 인구 분산정책에 의하여 많은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면서 많은 유흥업소가 생기면서 조직폭력의 棲息環境이 조성되었다. 군포역전파는 1987년 7월경 구 군포역전을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서모가 결성하였으며, 번개파는 의왕시 고천동 소재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박모가 중심이 되어 25명으로 결성되었으며, 신군포역전파는 1996년 7월 중순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광세커피숍에서 김모가 역전파가 일시 와해됨을 기회로 주변 불량배들을 규합·결성하였다. 군

포역전과는 서모, 벤펀스과는 최모, 번개과는 박모, 신역전과는 김모 등이 중심이 되어 군포, 의왕시 일원의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안산 지역은 1987년 6월 초순경 박모 등이 목포에서 상경 목포파를 결성하였으며, 원주민과는 1988년 3월 초순경 안산 출신 유모 등이 외부 폭력배들로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코저 40여명으로 결성되었다. 전주과는 1988년 4월 초순경 전주에서 안산으로와 당시 업소를 운영하던 양모 등이 운영하는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고향 선후배를 중심으로 약40여명으로 결성하였다. 전라도과는 이모 등이 원곡동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결성하였으며 또한 범과는 조모 등이 조직을 결성하였다. 전국구과는 1994년 3월경 박모가 주변지역 폭력조직에서 밀려난 조직원들 30여명이糾合 結成되었다.

화성 지역은 1997년 1월경 이모 등이 지역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발안종합유통과를 결성하여 유흥업소 등지에서 금품을 갈취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외의 조직에는 화성TNT과가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유흥업소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고양 지역 역시 都市化에 따라 自生的 土着 불량배인 진모 등이 주축이 된 원당부천과가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타지역으로 원정가거나 고양 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 무허가업소 영업권 탈취,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중고차 매매시장 이권개입, 농수산물 시장 이권에 개입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영역을 확장하였다.

과주 지역의 폭력배는 활동지역이 금촌읍과 문산읍으로 양분되어 금촌지역은 유모가 결성한 성호과와 성호과 이후 잔존세력인 김모가 스포츠과가 재결성되었고 문산지역은 이모가 광희과와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모 결성한 우봉과가 발호하였다.

의정부, 남양주 지역은 1988년에 의정부지역의 폭력배인 우모가 세븐파를 결성하여 의정부일대 유흥가를 상대로 금품갈취 등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대항하기위해 1991년에는 신모가 용철파를 결성하였다. 1995년에는 세븐파 두목에 반대하여 박모를 중심으로 신세븐파를 결성하였고, 그외에도 群小組織으로는 박모가 동열파와 학생 폭력조직 블랙홀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의정부와 포천에서도 이모가 결성한 자생조직인 천지개벽이 포천 일대 유흥업소 주변에서 서식하다 와해되었다. 현재 신세븐파는 의정부와 인접한 남양주까지 유흥업소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활동하고 있다.

양평 지역은 1980년대 초반 불량패거리들이 양평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애향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유흥가 및 위락시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여왔다. 1987년에는 이모가 애향회에 대항키 위해 의송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이후 양 조직간에 상호 대립하던 중 애향회라는 조직으로 일원화된다. 1988년 11월경 양평군에서 안성의 파라다이스파와 싸움을 벌여 타 조직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분리되어 의송회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의송회에 대항하는 조직이 1989년 10월 하순경 문모가 한누리파를 결성하여 대립하였다. 안성 파라다이스파와 조직간의 다툼으로 세력이 와해되었던 애향회는 당시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출소하고 1991년 12월경 이모가 출소 조직를 재건코져 애향회의 조직원들을 규합하던 중 1993년 3월경에 덕수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모는 덕수파에 대항하여 오삼이파를 결성하였다.

기타 지역인 여주에는 희망상조회, 이천에는 새생활파, 설봉파, 안성지역에는 파라다이스파, 백악관파, 안성파, 성남지역에는 국제시장파, 신관광파, 평택에는 청하위생파, 송탄에는 신 중앙훼미리파가 활동 중에 있다.

<表4> 仁川・京畿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년도 \ 지역	인천, 경기
1950년대	화장터과, 도원동과(모모야마), 신포동과(미야마찌)
1960년대	신포동과, 창영동과, 인천애향회, AP과, 송림중앙시장
1970년대	하인천과, 하수동과, 수원과, 남문과, 북문과, 피바람과, 스틱스과, 파라다이스과, 백안관과, 송림동 중앙시장과
1980년대	부평식구과, 부천식구과, 청하위생과, 수원역전과, 매탄과, 범과, 용청회, 안산전주과, 안산원주민과, 안산목포과, 군포역전과, 석바위과, 시지6과, 백악관과
1990년부터	AP신과, 인천토박이과, 선장과, 주안식구과
1992년	인덕원과, 광희과, 여주희망상조회
1994년	연수과, 석남식구과, 연안과
1995년	종합시장과, 범과, 신중앙훼밀리과, 스포츠과, 신세븐과, 광명사거리과, 설봉과
1996년부터	관광과, 발안유통과
1997	신주안식구과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3. 大邱・慶北, 釜山・慶南 地域

1) 대구

1950년말(자유당 말기) 대구역에서 중앙통 길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향촌동, 좌측으로 동성로를 무대로 폭력배들이 세를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향촌동은 대구의 일번지로서 유흥업소 및 극장 등이 밀집되었다. 향촌동을 중심으로 폭력배들이 세를 형성하여 '향촌동과'로 활동한 것이 대구 폭력조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모가 결성한 '향촌동파'는 중구 향촌동 자유극장앞, 대구역을 중심으로 대구 시내 중심지 유흥가를 장악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향촌동파에서 일부 조직원들이 탈퇴하여 강모 등을 중심으로 대구백화점 및 삼덕동 일대 유흥업소를 장악하며 폭력조직 동성로파가 발호하기 시작하였다. 향촌동파는 이모 이후 김모를 두목으로 하여 동성로파와 대립하고 있었다. 1976년 6월 20일 대구 수성호텔 수영장에서 향촌동파 두목 김모는 광주 폭력조직의 지원을 받은 동성로파 강모 등에 의해 칼로 난자당하고 현장에서 사망 당한다. 이후 대구 폭력조직은 대구 중앙로를 경계로 향촌동 일대를 향촌동파 두목 박모가 조직원 40여명 규모로 차지하고 동남쪽 동성로 일대를 동성로파 두목 오모가 구동인동파와 재래파 조직원을 규합 조직원 70여명의 규모로 장악하며, 향촌동파와 동성로파는 끊임없는 대립관계를 유지한다.

1980년 三淸敎育 실시로 대구지역 조직도 사실상 와해되고 폭력배들이 은신하며 소강상태를 맞다가 삼청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또다시 폭력조직이 발호가 극에 달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1982년부터 향촌동파 동성로파의 발호가 재개되며 대형 유흥업소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양대 조직간 보복성 폭력이 반복되고 호텔 슬롯머신 영업에 관여하며 자금을 축척하여갔다. 대구시내 상권이 광역화되어가고 대구시내는 주차공간 협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며 유흥업소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시외곽으로 이전하자 양대 폭력조직에 대항하는 군소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신암파, 원대파, 달성과 등이 발호하였다. 1989년 9월 18일 신암파, 달성과, 원대파가 연합한 형태로 향촌동파에 보복극을 벌인 대구 크리스탈호텔 나이트 클럽난동사건은 향후 대구 폭력조직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각 지역별로 신천동파, 양지파, 칠성과 등의 군소 폭력조직의 발호를 가속화되었다.

1990년 초기 대구 폭력조직은 동성로파, 향촌동파 외에 12개 군소 폭력조직이 조직원 400여명이 넘는 거대한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경제적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경제력 조직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90년 초반의 기세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배중인 향촌동파 두목 박모, 동성

로 구과 두목 예모, 동성로과 두목 오모 등이 검거되면서 세력이 급속히 와해되었다. 향촌동과와 동성로과의 세력이 약화된 사이 1990년초 대구 신홍폭력조직인 돈지과가 남산동과 두목 김모 습격사건은 기존 조직의 와해 공백기를 장악하려는 신홍조직간 세력확장을 위해 충돌한 대표적 사건이며, 대구 시내 외곽의 봉덕동일대의 미국전용클럽에도 신홍 폭력조직들의 발호가 시작되었다. 1994년 이후 대구 폭력조직은 향촌동과, 동성로과의 독주에서 벗어나 신홍폭력조직 18개과 360여명으로 확장되었고, 이들 조직은 과거의 중요 자금원인 오락실 등의 이권개입이 여의치 않자 사채업 등에 개입하면서 나이트 클럽, 룸살롱 등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1995년 대구의 기존 폭력조직인 향촌동과, 동성로과가 와해 직전의 상태로 있던 것을 과거 동성로과 조직원이었던 김모는 추종세력을 재규합하여 신동성로과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자칭 '경제건달'을 표방하며 호텔 및 클럽, 룸싸롱 등의 지분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인 서울에 OB과, 광주 국제PJ과, 전주 나이트과, 이리 배차장과 등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조직들과 친목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연계 활동을 벌이다 1999년경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현재 대구에는 동성로과, 향촌동과, 달성과, 신동성로과, 돈지과, 성서과, 원대과, 로터리과, 양지과, 칠성과, 산격과, 신천동과, 신암동과, 고산과, 지산과, 범어과, 서부과, 성근과, 월배과 등 17개과에 37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2) 경북

1950년대 말부터 조모가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김천, 포항, 영천, 안동으로 추종세력을 규합하면서 폭력배 세력이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구미, 김천지역은 두목 조모가 1961년 대구 폭력조직에서 이탈하여 서울로 진출하여 오모, 조모를 휘하에 두고 신상사와 습격하였으나 실패한 후 구미로 내려와 박모 등 10여명을 규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김천, 구미지역에서는 호텔과 오락실을 상대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1990년부터는 구미지역에서는 박모가 결성한 연주과와 신모가 주축이 된 영수과가 서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세력다툼을 하다가 관련자 검거로 와해되었다.

안동지역은 1986년에 도모 등이 대명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나 미미하였고 1988년경에는 이모, 조모 등이 주도로 일송회를 결성하였으나 '대명회'로 흡수되면서 조직원 60여명을 거느린 경북 최대규모의 폭력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포항지역은 1980년 말부터 포항제철과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폭력배들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영천지역은 대구, 포항 등 인근 대도시와 달리 폭력조직이 발호하지는 않았으나 주점 등이 운집해 있는 영천시 완산동을 중심으로 1988년부터 소야파와 우정파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안동에는 대명회 영천에는 우정파, 소야파 포항북부에는 삼거리파, 시내파, 포항남부에는 일심파 등 6개파에 2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表5> 大邱·慶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지역 년도	대구, 경북
1960년대	동성로파, 향촌동파
1970년대	조창조파
1980년대	안동대명회, 금잔디파, 장미파, 짱구파, 아파치파, 태평양파, 연무사거리파, 화성파, 영천우정파, 영천소야파, 포항북부(삼거리파, 시내파), 포항남부 일심파
1992년부터	신천동파
1995년	신천동파, 서부파, 칠성파, 지산파, 월배파, 일심파
1996년부터	산격파, 신암동파
1998년부터	삼미파(안동)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3) 부산

부산의 조직폭력은 전국의 일반적 조직폭력의 초기 생성과정인 학원 폭력이나 동네 불량배 중심의 폭력배가 조직폭력으로 탈바꿈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모양으로 조직폭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1950년 6·25사변 이후 부산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피난민 집단이 폭력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초기부터 조직적, 집단적, 흉폭화의 경향으로 생성되기 시작했고, 日本文化를 접할 여건이 타지역 보다 수월한 점도 부산의 조직폭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항구의 특성상 밀수가 용이하여 70년대 초반까지 주자금원이 되었고 1980년대까지는 필로폰제조, 밀매에 부산지역 폭력조직이 직간접으로 연계되었으며 1985년부터 1996년까지는 관광호텔 오락실 운영권과 관련 부산지역 조직폭력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발호가 극대화되었던 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

부산지역 조직폭력의 뿌리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칠성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세기파, 서면파, 신칠성파, 신20세기파, 영도파 등의 폭력조직이 발호하기 시작하였는데, 부산 각 폭력조직의 활동지역은 1961년 5·16혁명이후 부산시내 남포동·부평동 일대는 이모를 주축으로 한 칠성파가, 광복동·남포동 일대는 대신동 폭력배를 규합한 김모, 정모를 중심으로 한 20세기파가, 서면 일대는 명모를 중심으로 서면파가 장악하였다. 칠성파, 20세기파 이들 양대 폭력조직은 세력확장을 위해 폭력사태가 頻發하였다.

제5공화국 출범을 전후로 하여 실시된 삼청교육 등으로 인하여 조직원 대다수가 검거 수감됨으로서 와해되는 듯 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칠성파는 김모 등이 신칠성파로, 칠성파 부두목 천모는 영도파를 결성 분파하고, 20세기파는 안모, 정모가 신20세기파를 결성하여 군소폭력조직을 포함 약 24개 조직으로 細分되어 난립하면서 세력다툼이 치열하였다.

1980년대초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부산지역은 거의 와해되어 명맥만 유지하다가 1997-1999년 두목급들이 출소하면서 최근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부산 近郊의 김해, 경남지역인 신홍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폭력조직들과는 해방 이후부터 국내 폭력조직들과 연계되어 밀수, 마약 등의 거래를 하였고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공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산 조직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연계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부산 지역이 일본의 조직폭력과 연계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공개적인 것으로는 1980년대부터 유모 등이 일본의 우익단체와 연결된 야쿠자 조직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수원의 최모 등이 일본 정기숙 執長 오카지라 세이로와 연계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부산 조직폭력은 1980년 초반부터 급속하게 야쿠자를 모방하였다. 야쿠자 따라가기식의 모방풍조는 부산폭력조직을 시작으로 전국의 폭력조직으로 확산 되었다. 이들에게 자금지원을 노려 예측되길 자청하며 머리모양, 옷차림은 물론 조직내 예절, 잔혹한 보복, 신체 전신에 새기는 文身, 엄격한 규율 등은 부산 및 국내 폭력조직의 야쿠자 모방 현상이다. 이러한 형태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오야봉'이라 호칭되는 두목은 신과 같은 존재로 조직원들은 두목과 조직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철저한 사생관을 가졌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부산 폭력조직에 유입된 야쿠자 문화는 오야봉 경호, 수입원 확보, 잔인한 보복, 조직원 훈련, 조직의 확장 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반성과 참회의 표시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야쿠자 斷指 儀式, 직접 오락실이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업소에 술, 안주, 물수건 등을 독점 공급하여 폭리를 취하는 수법, 스포츠 머리형(일명 깎두기 머리)에 검정색 계통의 단색 양복을 착용하는 것, 전신에 용, 뱀, 활, 꽃무늬 등을 섞어 새겨 넣는 것, 사시미칼 사용 등⁶²⁾, 마약거래 및 복용⁶³⁾ 등 일본 야쿠자 문화 그대로 받아들인 것들이다. 이러한 추세는 부산 폭력조직들이 일본 조직폭력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국내폭력조직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62) 야쿠자는 사시미 칼을 무기로 사용치 않는 반면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이 가장 애호하는 무기인데 이는 야쿠자들이 '죽여버린다'란 뜻의 은어로 '사시미를 뜬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63) 과거에는 '나라와 사람을 망치는' 물건은 취급치 않았으나 지금은 야쿠자를 모방 또는 이들과 연계하여 마약을 밀매하고 일부는 스스로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

현재 부산에는 신20세기파, 재건20세기파, 광진파, 운동장파, 영도파, 용민파, 물개파, 신당감동파, 300번지파, 칠성파, 신칠성파, 유태파, 해룡파, 명훈파, 용호파, 재건기장파, 동호파, 대운파, 장철파, 한갈파, 황제파, 월드파, 연산동파, 신연산동파 등 24개파에 약400여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4) 경남

경남의 조직폭력배의 분포는 해안선을 따라 울산울산을 중심으로 동부 경남지역권과 마산, 창원울산을 중심으로 한 중부 경남지역권을 진주, 사천, 통영지역을 중심으로한 서부 경남지역권 및 내륙지역인 김해, 밀양, 거창, 합천, 창녕 등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울산지역의 조직폭력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군소조직이 발호하다가 工業化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1983년 김모가 성남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 목공파를 결성하여 울산시내 오락실, 유흥업소 이권개입 및 직접운영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울산시내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하였다.

1986년 7월경에는 강모가 울산시내 자생단체로 폭력단체들을 규합 신역전파를 결성하였는데 신역전파는 결성초기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치 못하다가 1988년 부산 칠성파 두목 이모 주도로 결성된 화랑 신우회에 가입을 하고 이모와 연결된 모습을 과시하면서 목공파와 울산시내 이권장악을 놓고 보복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유리원 백화점앞 살해사건으로 울산의 양대 폭력조직은 조직원 20명 이상이 구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1차 와해 상태를 유지하다가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세력이 위축되었다.

울산시내 외곽에서 활동중인 군소조직으로는 울산 동구지역에 방어진파, 남목파가 활동 중이고 신역전파, 목공파를 추종하는 패거리성 폭력조직인 신역전 추종파, 현진파, 주공파, 시장파, 경일파, 아진파, 구방파 등이 유흥업소등지에 기생상태로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산은 1970년대부터 진해의 박모, 팽모를 중심으로 폭력조직이 발호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마산, 진해의 군소조직들은 부산 칠성파 두목 이모가 결성한 화랑신우회에 가입한 마산의 황모, 송모, 김모와 진해의 박모 등을 중심으로 한

폭력조직과 김모 등이 결성한 일송회로 양분되기 시작하여 북마산과, 오동동과, 신마산과, 합성동과, 박진섭과 등이 유흥업소 주변 등을 무대로 暗闘를 벌였다. 1995년 1월에는 합성동 유흥가를 무대로 조모를 중심으로 성만과, 1996년 중반에는 마산, 창원 지역에서는 오락실 운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한 송죽회가 최대조직으로 성장하며, 창원에서는 1996년 전후로 조직 확장 중이던 영철과와 주필과가 유흥업소 영업 보호 관리지역을 내세우며 이로 인한 대립으로 충돌이 빈발하였다. 진해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박모가 결성한 진섭과가 결성되어 세력을 확장 성장하였다.

마산, 창원지역에서 현재 활동중인 군소폭력조직으로는 강모를 중심으로 한 오동동과, 최모의 태영과, 이모의 행우과, 김모의 억만과, 구모의 영모과, 이모의 주필과, 신모를 중심으로 한 명근과가 창원의 중앙동과 마산시내를 무대로 활동 중에 있다.

<表6> 釜山·慶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지역 년도	현황
1960년대	칠성과
1970년대	진해진섭과, 20세기과
1980년대	신20세기과, 영도과, 신칠성과 화랑신우회, 박영웅과, 조평제과, 목공과, 신역전과, 연산동과, 유태과
1990년부터	남목과
1992년	억만과, 병울과, 하수천과, 재건20세기과
1992년부터	신당감동과
1994년부터	프라자과
1995년	300번지과, 해룡과, 양포과, 북마산과, 오동동과, 영춘과, 영호과, 영성과, 물개과
1996년부터	용민과, 재건기장과
1997년부터	신목공과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4. 忠南·北 地域

1) 忠南

충남 지역 조직폭력도 일반적 폭력조직의 생성과정인 학교주변 불량씨클이나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하는 불량배들이 중심이 되어 불량배 등을 규합하여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갖춘 폭력조직으로 변모하는 전형적인 유형을 답습하였다.

충남 지역은 1950년 6·25사변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전 역전 주변의 노점상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인근패거리들과 세력다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1970년대 중반경 대전 시내 유흥가를 무대로 서모가 쪽제비파라는 조직을 결성하였고 김모를 중심으로 목포내기파를 결성 서로 세력다툼을 해오다가 '三清教育' 등으로 양대 폭력조직은 와해되었으나 1980년 중반경 전국적으로 폭력조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쪽제비파 일원이었던 김모가 자신을 추종하던 조직원과 불량배를 규합하여 진술파를 결성하였고, 쪽제비파에서 목포내기파로 이적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김모는 다시 옥태파를 결성하여 다시 양대 폭력조직이 이권장악을 위한 다툼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충남 각지에는 폭력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발호하기 시작하였다.

대전 지역에는 1988년경 유성구 일대를 무대로 박모가 중심이 되어 장미파를 결성하였고, 동구 유천동 일대에서는 박모가 짱구파를 결성하였으며, 1989년경 유성구 일대를 중심으로 김모가 응창파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천안 지역에서는 1988년경 천안 역전 유흥가를 중심으로 민모가 중심이 되어 남삼파를 결성하였고, 터미널 등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모가 미도파를 결성하였다.

논산 지역에서는 1988년경 논산읍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양모 등이 한실이파, 남모 등이 중심이 된 대가파를 결성하였다. 1989년경에는 논산시 연무읍을 중심으로 연무사거리파가 결성되었다.

아산 지역에서는 1989년경 아산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모 등이 태평양파가 결성되고 유모 등이 그랜드파를 결성하였으며 공주 지역에서는 1985년경 공주

중동 사거리 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이모 등이 중심이 된 거지파, 조모 등이 금잔디파를 결성하였다.

보령 지역에서도 1988년경 보령 및 대천시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구모 등이 태양회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폭력조직이 발호가 1990년대까지 발호하였으며 1990년대는 대전 중구를 박모 등이 양석이파, 1991년경에는 유성구를 중심으로 박모 등이 오천파를 결성하였으며, 천안에서는 1992년도에 성황읍 유흥가를 중심으로 손모 등이 오거지파, 서산은 1997년경 태안 일대를 무대로 신모 등이 르네상스파를, 조직원이었던 박모 등이 상무파를, 보령지역에도 1991년 덕산면을 중심으로 이모 등이 신로알파를, 1993년경에는 이모 등이 예산파를 결성하였다. 위 조직들은 대부분 무차별적 보복등으로 인해 조직의 노출되고 조직폭력배 일제소탕 등으로 대부분 몰락하였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진술이파, 양석이파, 장미파, 짱구파, 응창파, 온천파, 역전파, 남산파, 아파치파, 미도파, 오거지파, 상무파, 르네상스파, 한실파, 대가파, 연무사거리파, 그랜드파, 태평양파, 거지파, 금잔디파, 태양파, 신태양파, 동수파, 신로알파, 예산파 등 총 25개파 359여명이 표면상으로는 몰락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아직도 여러 조직들은 은밀하게 활동 중에 있다.

2) 충북

충북 지역의 조직폭력도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불량씨클 중심이 되어 폭력패거리 형태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청주 지역에는 야망파가 있었고 기타 지역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량배들이 있었다. 폭력패거리들은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폭력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부분 와해되었으나 청주 지역 야망파는 조직원을 각 기수별로 관리하는 등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1980년대 중반까지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비슷한 시기에 김모를 중심으로 한 시라소니파, 김모를 중심으로한 파라다이스파가 발호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 왔다.

1980년대 중반경 야망파의 내분으로 조직원이었던 최모가 자신을 추종하던 폭

력배들과 시라소니파로 흡수되고 또한 신모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파라다이스파로 흡수됐다. 또한 야망파의 조직원이었던 김모, 전모는 자신을 추종하던 조직원 및 학교주변 불량배 씨클인 찬바람, 풍운아, 흑주관이라는 체육관 관원의 친목단체인 화성을 규합하여 화성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야망파 몰락 이후 청주 지역 폭력조직은 상호대립관계를 유지하며 세력을 확장시켜 왔으나 폭력조직으로서의 활동은 미약하였다. 1988년경 이모를 중심으로 전국조직체패를 시도하기 위하여 결성한 호국청년연합회 충북지부장에 김모 등이 가입하는 등 그 위력을 과시하였으나 이모가 '統一民主黨 創黨妨害事件'으로 구속되면서 몰락하였다. 1989년경에는 시라소니파를 최모가 장악하고 파라다이스파를 신모가 장악하면서 양조직은 폭력조직으로서의 기반을 닦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 시라소니파는 청주시 북문로 1가 중앙극장 및 중앙동에 이르는 유흥업소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신규조직원을 규합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반대파인 파라다이스파와 세력 다툼을 계속하였다. 파라다이스파는 청주시 우체국에서 석교동 꽃다리 사이의 유흥업소를 장악하였다.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는 황모 등 50여명이 중심이 된 14인조파 결성 활동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조가파 40여명이 결성되어 제천일대 유흥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보은에서는 하나회라는 폭력조직이 결성되어 시라소니파와 연계하였으며, 기타지역인 괴산의 양회파, 충주 수안보에 석만이파 등이 발호하였다가 몰락하였다.

현재 청주 지역은 1989년부터 재규합 및 결성된 3대 폭력조직이 유흥업소 이권개입과 활동영역 다툼 등으로 시내 중심가의 접경지역인 군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북문로 일대를 시라소니파, 50여명이, 남문로 일대는 파라다이스파 40여명이, 북대동, 가경동, 봉명동 일대 서부지역에는 화성파 80여명 등 5개파 300여명 정도가 활동 중에 있다.

<表7> 忠南·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지 역 년도	충남, 충북
1970년대	쪽제비파, 목포내기파, 진술파, 옥태파, 시라소니, 파라다이스, 화성파
1980년대	그랜드파, 금잔디파, 장미파, 짱구, 아파치파, 태평양파, 연무사거리, 화성파, 양석이파, 응창파, 대가파, 미도파, 남산파
1990년부터	14인조파
1992년	조가파, 온천파, 오거리파, 르네쌍스파
1992년부터	신태양파
1995년	예산파
1996년부터	동수파
1998년	호청파(진천)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5. 光州, 全南·北 地域

1) 광주

박정희 정권 이후 정치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산업화가 진행되나 정치, 사회, 산업적 영향을 받아 농업을 主基盤으로 하는 1차 産業偏重化가 심화되어 타지역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에게는 열악한 여건에서 육체적 노동보다 불법적 수단을 통한 致富와 出世를 하는 선배들을 보고 학업보다는 폭력배들의 수발에 목숨과 미래를 걸고 富와 享樂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만연해 갔다.

특히 서울 등지로 진출한 폭력조직 3대 패밀리 조직인 서방파, 양은이파, OB파 등이 광주 폭력조직의 대명사로서 전국의 마스크들이 이들 폭력조직을 미화하는 등 이지역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배들을 영웅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한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는 특히 조직폭력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6·25사변 이후인 1950년 중반부터 광주시내 중·고교에서는 자퇴한 복학생들이 편입하여 학교안에서도 나이많은 학생들이 우두머리로 하여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학생폭력씨클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광주 폭력조직의 발호가 되는 유명한 학생 폭력인 전모의 케세라, 심모의 행어나, 최모의 오케이등 3대 씨클간에 광주시내 장악을 위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등 광주 조직폭력의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군사 구테타로 전국구 두목들은 대부분 소탕되었으나 광주 지역에서는 행여나는 대호파로 케세라는 동아파로 결성되어 치열한 이권 다툼이 있었으나 대호파가 승리하였다. 당시 동아파의 부두목이었던 박모, 조모 등이 서울로 상경하여 폭력조직의 3대 패밀리의 하나인 양은이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호파는 구OB파와 신OB파로 동아파는 동아파, 서방파, 대인동파, 시민파로 분파되었다.

광주폭력조직을 근거지로 서울 지역에 진출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한 폭력조직의 3대 패밀리라고 부르는 서방파 김모는 1974년경 서울로 진출하여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목포에서 서울로 진출한 박모의 번개파 수하로 들어갔다. OB파 이모도 서울로 진출하여 오모의 범호남파 수하로 들어갔다.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이후 정부의 강력한 조직폭력 소탕과 삼청교육대 운영 등으로 1984년까지는 사실상 와해되었다가 다시 서서히 발호하기 시작하여 1986년부터 구서방파 계열인 국제PJ파가 결성되었고 콜박스파도 결성되었다. 특히 5공화국 말기인 정권교체 시기인 1987-1988년경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서는 정치인들이 폭력배를 선거에 이용하는 등 혼란한 민생치안의 공백기를 틈타 폭력조직들이 대거 결성되었다.⁶⁴⁾ 광주시내 신세기 백화점, 충장로3가 제일극장 주변 일대를 두목 원모가 무등산파(구OB파)를 금남로3가 신양다방, 황금동 런던약국 사거리 주변일대를 전모가 신양OB파(구OB파)를 금남로 1가

64) 서울지방경찰청, 「한국 조직폭력의 실체」, 1999, 949면.

광주관광호텔 주변일대를 이모가 신양관광과를 학동 그랑프리 주변일대를 무대로 한 이모가 학동과를 결성하였으며, 황금동 리버사이드 호텔 주변일대를 육모가 리버사이드과를 광산동 구시청 4거리 일대를 무대로 박모가 총장OB과, 수기동 일대에서 조모가 수기동과 등 群小組織 계림과, 백운동과 등 광주시내 일대가 폭력조직배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 1989년 광주는 폭력조직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으며 폭력조직원의 숫자도 가장 많은 시기였고 생생 또한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이때 PJ국제과, 콜박스과, 무등산과, 신양OB과, 신양관광과, 수기동과, 총장OB과, 학동과, 계림과, 리버사이드과, 공원과, 대인과, 백운동과, 최천과 등 폭력조직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위 폭력조직들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1989년말경부터 빠친코, 유흥업소, 도박장 개설, 업소상대 금품갈취, 물품강매, 건설업 입찰 관여, 부동산투기 관여, 청부폭력 등에 관여하면서 조직확장을 꾀하면서 조직간에 집단폭력, 조직이탈자에 대한 보복, 살인 등을 계속하였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부터 1993년경까지는 폭력배들 활동이 정지되어 평온한 상태를 유지케 되었다. 1994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도 광주시내에는 무등산과, 콜박스과, 신양OB과, 국제PJ과, 총장OB과, 신양관광과, 수기동과, 학동과 등 뿌리가 깊은 폭력조직의 잔존 조직원들이 시내에 남아 있었으나 활동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은신하고 있던중 1993년경부터 경기가 호전되면서 서서히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현재 광주시내 일원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송모의 콜박스과 70여명, 원모의 무등산과 100여명, 이모의 신양OB과 60여명, 박모의 두암과 20여명, 이모의 신양관광과 60여명, 박모의 신서방과 20여명, 김모의 국제PJ과 90여명, 음모의 총장OB과 80여명 육모의 수기동과 20여명 등 총9개과에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 전남

목포 지역의 폭력조직은 1950년대 후반까지도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역연고 중심의 패거리 형태로 머물고 있다가 광주 지역 폭력조직의 영향을 받아 태동한 걸로 보인다.

1960년대 중반경 목포 폭력조직 1세대격인 박모가 신상사과 조직원으로 활동 중 1970년대 초반 동향출신인 오모 등을 규합하여 번개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서울 소공동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1970년대 초반 서울에서 활동하던 호남출신 폭력조직인 호남파 오모와 연합하여 범호남파를 결성 상사파를 와해시키는 등 전국제패를 시도하였다. 범호남파는 번개파 행동대장이었던 김모가 오모를 공격하자 오모가 은퇴하고 조모가 그뒤를 이었다. 순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패거리들이 상경하여 호남 지역 조직폭력에 가입 활동하였다. 이후 1986년과 1990년경에 광모의 시민파, 신모가 양파, 배모가 역전파를 결성하였다.

1970년대 말경 강모가 목포시 상학동 일대에서 강대우파를, 1980년대 초반경에는 이모가 목포시 죽동 일대를 중심으로 민석파를, 황모가 서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황성남파를 결성하였다. 1980년대 초반경 서울에서 활동중이던 김모가 귀향하여 강대우파 조직원으로 활동중인 강모와 결별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강모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상경하여 송파, 강남, 강동 등지에서 자리를 잡고 목포출신 천모, 오모 등이 맘보파를 결성하면서 全國制覇를 꾀하였다. 이때 여수 지역에서는 정모, 백모 등이 구중앙파를 결성하여 유흥가 및 여수광양만 일대의 보호수면에서 자생하는 어패류 채취권을 독점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 중반경 이에 대항하는 김모, 한모 등이 주축이 되어 구중앙파를 결성하였고, 여천지역에서는 여천청년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었다. 1984년경 강대우파 조직원이었던 김모가 두목 강모를 몰아내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서산파를 결성하였으며, 박모가 안개비파, 김모가 수노아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나 범죄와의 전쟁이후 몰락하였다. 1989년 광양지역에서는 우모를 중심으로 한 라이온스파와 백모를 중심으로 한 백호파가 결성되어 양대 조직간에

세력확장을 하여 왔다.

<表8> 光州·全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지역 년도	광주, 전남
1950년대	오케이, 행여나, 케사라
1960년대	대호파, 동아파
1970년대	구OB파, 신OB파, 대인동파, 시민파, 서산파, 순천중앙동파
1980년대	콜박스파, 무등산파, 신양OB파, 공원과
1980년대 후반부터	계림파, 수기동파, 국제PJ파, 신양관광파, 백운동파, 최천파, 리버사이드파, 총장OB파, 학동파, 우림파, 십계파, 다산파, 백호파, 라이온스파, 오거리파, 수노아파
1995년	두암파, 신서방파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3) 전북

해방 이후 197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전주의 都市化는 미약하여 주민들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의존하는 小作農이었으나 이때에는 지역연고 단위의 패거리 형태로 불량배들이 존재하였고 체계적인 폭력조직은 없었으며 단지 패거리 일원 중에 힘깨나 쓴다는 이들은 개인 단위로 상경하여 서울 지역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가입을 하여 활동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전주 지역 개발과 더불어 유흥가 등이 들어서고 많은 학교의 설립 등으로 전북 동부권(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지역의 학생 등이 전주 시내로 유입되고 공단지역의 활성화되고 유흥가가 번성을 이루자 기존의 패거리 형태로 있던 불량배 등이 결합하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불량씨쿨(영11, 코아 등)의 학생을 끌어들여 태권도 체육관을 중심으로 집단훈련을 실시하면서 다른 패거리들과 대결을 벌였다. 이때에 전북 태권

도연맹회장이었던 이모, 완산구 중앙동 주변으로 주모, 전주나이트 클럽 주변의 이모, 완산구 고사동 오거리 주변에서 오거리과의 서모, 완산구 전동의 맘문과의 강모, 덕진구의 중앙시장 중앙시장과의 설모, 완산구 고사동 다가동의 영일레븐과, 덕진공원 일대의 최모, 전주역 일대 신역과의 추모, 금암동 일대의 금암과의 정모,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의 터미널과의 박모 등의 서로 대결을 벌여왔다.

군산 지역은 70년대 후반까지는 연고지 중심으로 한 패거리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익산 지역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학생불량씨클(월계수, 베틀, 청학, 영11, 공단10인조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폭력으로 나아가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각 패거리간 세력다툼을 벌이던 중 주모가 월드컵과 김모 등이 코아과 및 영11과 등을 규합 나이트파로 결성하여 전주시내 2대 폭력조직으로 급부상하였다. 또한 이때 패거리였던 오거리과, 남문과, 중앙시장과, 영일레븐 이탈과가 규합하여 월드컵파를 나이트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최모를 두목으로 한 오거리과가 결성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전주 금암동 소재 우석빌딩 일대를 무대로 금암과 정모와 터미널과의 박모가 1989년경 타워파로 결성 세력을 확장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에 신역전과와 남부배차장과가 결성하여 북대과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군산 지역에서는 김모가 신창동 소재 빅토리아 나이트클럽 주변의 불량배를 중심으로 그랜드파를, 장미동에서는 양모 등이 추종세력을 규합 백학파를 결성하였다.

익산 지역은 창인동 소재 구 배차장을 중심으로 폭력을 일삼던 폭력배들이 주축이 되어 배차장파를 중앙동을 중심으로한 중앙과가 결성되었고 익산역전을 중심으로 역전과, 창인동을 중심으로 삼남백화점과가 결성되었다. 또한 익산시 인화동 주변으로 구시장과, 창인동·남중동 주변으로 대전사거리과가 결성되었다.

현재 익산은 6개조직(배차장, 역전, 구시장, 중앙동, 대전사거리, 삼남백화점)이 있으며 정읍 지역에서는 역전, 터미널 일대 관광버스 영업 이득권을 목적으로 중앙과가 남원 지역은 쌍교동 주변으로 한가족과, 솔벗과 등이 활동하고 있고 이외에도 고창에는 모양과, 김제는 읍내과, 성산과가 활동 중에 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전까지 1980년대는 전주시내 폭력조직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全州 지역 폭력조직은 두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폭력배 소탕으로 대거 구속되면서 와해의 분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잔존조직원 및 미체포 조직원을 중심으로 신규조직원을 규합, 비대한 조직을 점조직의 형태로 전환하여 서울 등지로 진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구속 조직원들의 출소 등으로 와해되었던 조직 재건 움직임이 예상된다.

<表9> 全州·全北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년도	지역	전주, 전북
1980년대		나이트파, 월드컵파, 배차장파
1980년대 후반부터		중앙동파, 삼남백화점파, 역전파, 오거리파, 구시장파, 군산그랜드파, 대전사거리파, 백학관파, 중앙동파, 김제성산파, 김제읍내파, 한가족파, 타워파 일송회
1996년부터		술벗파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6. 江原道 地域

강원도 지역은 전통적인 지역정서와 개발의 저조로 조직폭력배의 세력은 타 지역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조직폭력의 전단계인 학원 폭력이나 불량씨클 등의 폭력화 현상은 타 지역과 다름없이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1960년대 전국 폭력배 검거 소탕령이 있는 후 검거된 조직폭력배에 대하여 순화교육을 시키면서 이들 폭력배들 중 일부는 소양강댐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하

였고 1969년 10월 폭력배의 순화교육이 종료되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강원도 내륙 및 해안지역 부근의 탄광촌으로 유입되었다. 이 시기까지는 강원도에는 조직화된 폭력배는 없었고 경춘선, 중앙선을 무대로 한 소매치기 형태의 폭력배가 활동하고 있었다.

1970년 5월부터 태백, 황지 등 탄광촌에서 김모 등의 탄광촌 주변을 상대로 갈취하는 폭력배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동년 6월경에는 춘천에서 김모 등이 조직한 상하이파가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갈취하는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 이전까지는 강원 지역 폭력사건의 70%가 영월, 정선, 태백 등 탄광지역과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강원도 동해안지역 개발과 함께 1979년 9월 강원도 북평, 쌍용, 동해 싸이로 공장 현장에서 장모 등 지역폭력배 10여명을 동원 공장 난입하여 공사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으나 제5공화국과 함께 시작된 삼청교육으로 인해 발호 기미를 보이던 강원지역 조직폭력배는 1986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1987년 1월 주모가 춘천시내 호텔과 오락실 및 나이트 운영권 장악을 위해 성권파를 결성하였고, 1988년에는 원주에서 김모가 종로기획파를, 1989년 태백에서 이모가 이양원파를 결성하였으며, 1989년 동해에서 유모가 유진기획파를 결성하여 지역 상대로 활동하였다.

1990년도에는 강원도 전지역이 관광지역 개발과 함께 각종 위락시설과 유흥업소가 형성되면서 강릉 및 속초 등지에서 발호하기 시작하였다.

강릉에서는 정모 등이 웨미리파를 결성 주문진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한 몰락하자 조직원이 일원이었던 김모가 다시 신웨미리파를 결성하였다. 속초에서는 박모가 박충근파, 현모는 현덕화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범죄와의 전쟁’시 와해되었다. 동해에서는 유진기획파 몰락 후 북평, 송정 지역에서 이모가 남부파를 결성하였다.

1995년대 춘천에서는 최모가 학원폭력집단인 연탄파를 결성하였는데 이들이 성인이 되자 승택파로 변신하여 춘천시 약사동 일대에서 발호하였다.

홍천에서는 서모의 서상진파, 1996년도 삼척에서 이모 결성한 아파치파, 1997년

대는 이모가 춘천지역 유흥가 이권장악을 위해 동기파를 결성하였고 정선에서는 김모가 정선기획파를 결성하였으나 초기에 와해되었다.

강원 지역 조직폭력배는 조직폭력의 뿌리가 깊지 않고 조직을 이끌기 위한 자금도 충분치 않아 확산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전통적인 춘천의 폭력씨클인 TNT, UDT, 연탄파와 동해안 지역의 레인보우, 거지 등 학원폭력조직이 내려오고 있어 폭력성 청소년 등을 통한 조직원 공급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강원 지역은 승택파, 동기파, 오세용파, 웨미리파, 종로기획파, 오준파, 남부파, 유진기획파, 이양원파, 박충근파, 현덕화파, 홍우정파, 아파치파, 우성기획파, 정선기획파, 서상진파등 16개 조직에 1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 지역 폐탄광촌인 정선지역을 중심으로 카지노가 성행하자 이에 편승한 조직폭력배의 발호가 예상된다.

<表10> 江原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년도	지 역	강 원
1970년대		상하이파
1980년대 후반부터		성권파, 동기파, 승택파, 종로기획파, 오준파, 유진기획파,우성기획파, 이양원파
1990년부터		웨미리파
1992년		박충근파, 현덕화파, 홍우정파
1995년		남부파, 서상진파, 승택파,
1996년부터		동기파, 오세용파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7. 濟州 地域

제주 지역의 조직폭력배는 陸地部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과 지역적 狹小性

으로 인해 타지역 폭력조직과는 다른 성장환경을 갖고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과거부터 몰락하는 兩班들의 유배지 역할을 하였는데 이로 인한 폭력조직 서식환경은 희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피난민이 제주도로 유입되자 外地人들에 대한 피해와 일종의 마을별, 지역별로 고향을 지킨다든지 하는 텃세 감정이 발생하여 외부세력에 대항하여 고전적 의미의 폭력배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나 지금의 조직폭력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만 해도 모든 여건이 불비하여 성장여건이 여의치 않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고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각종 향락사업인 유흥가와 관광지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이권 개입이 본격화됨으로써 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때부터 구제주를 중심으로 한 산지파와 신제주를 중심으로 한 유탕파,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땅벌파 등이 발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폭력조직은 유흥가나 관광지의 이권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확보하고 타 폭력조직간의 세력다툼을 벌여왔다. 이러한 와중에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두목급 및 조직원들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자금원은 1970-1980년경까지는 주로 항만주변과 유흥업소를 장악 1차적인 자금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부수적으로 밀수 등에도 손을 대기도 하였다. 1980년 중반부터는 유흥업소 갈취,⁶⁵⁾ 인신매매 및 海外淪落事業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면서 조직폭력집단으로 나아가게 된다. 현재까지 과거 활동양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땅벌파

1976년 12월 제주도 서귀포 소재 모중학교 서모 등 8명이 서귀동 소재 ‘땅벌 제과점’의 이름을 따서 조직을 결성하여, 한때는 조직원이 80여명이 넘는 등 조직이 성장하자 유흥업소, 밀수, 일본 등지에 해외매춘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6년 폭력배 일제소탕으로 두목 서모 등 조직원들이 처벌받

65) 제주일보, 1997년 9월 10일.

아 와해되자 김모 등이 잔류 조직원과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땅벌 이탈파를 결성 하였으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조직의 위기감을 느껴 다시 땅벌파와 땅벌 이탈파가 규합하였다.

2) 유탁파

1977년 12월경 제주시 일도1동 소재 구 동양극장 뒷골목 유성탁구장을 출입하던 중고생, 자퇴생, 재수생,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백모가 유탁파라는 불량씨클을 만든것이 모태가 되었다. 이들은 학생상대로 금품갈취, 유흥업소 상대 금품갈취 등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시기에 발호한 산지파와 각종 이권을 놓고 대립을 하기도 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서울 영등포 중앙동파, 전북 이리의 배차장과 등 타지역 조직과 연계되어 합숙훈련 등 상호 교류를 하기도 하였다. 범죄와의 전쟁이후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자 2세대를 중심으로 신유탁파를 조직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하였다.



3) 산지파

1997년 12월 말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산지천과 서부두 일대를 배회하던 불량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산지천 이름을 따서 정모 등이 산지파를 결성 학원 주변 폭력배로 성장하여 영세업소, 유흥업소, 오락실 이권 등에 개입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제주시내 2대 폭력조직의 하나로 성장, 타지역 조직과의 연계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유탁파와 마찬가지로 범죄와의 전쟁이후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자 2세대를 중심으로 신산지파를 조직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하였다.

위 조직들의 조직원 수는 조직별로 약 100-1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1년도 경찰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유탁파, 산지파, 땅벌파 3개파에 87명이다.⁶⁶⁾ 이들 폭력

66)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내부자료, 2001.

조직은 타지역 조직원들의 하계수련을 도와주는 등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 진출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직폭력의 활동유형 이외에도 마약거래, 일본 등지에 인신매매, 불법여행업⁶⁷⁾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위 조직외에도 제주도 표선 지역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조직에 20여명, 모슬포 아리랑⁶⁸⁾조직에 20여명, 중문지역 ‘88’에 20여명 등 지역 불량 폭력패거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조직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형성 과정을 보면 조직적인 폭력배 집단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으므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조직폭력배 문제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경우, 현재의 각 과별 계보별 폭력조직은 필연코 일본 등 국제폭력조직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도내 폭력조직이 국제폭력조직의 전진기지로서 전위역할을 할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하나로 조직폭력 대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금처럼 폭력조직이 건재하는 한, 국제폭력조직이 발을 붙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역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있다.⁶⁹⁾

<表11> 濟州 地域 時代別 暴力組織 現況

년도 \ 지역	제 주
1970년대	유탕과, 산지과, 땅벌과
1980년대	땅벌이탈과
1996년부터	신유탕과, 신산지과
2001 현재	유탕과, 산지과, 땅벌과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내부자료, 2001.

67) 제주일보, 1997년 9월 26일.

68) 제주일보, 1998년 2월 15일.

69) 제주일보, 2000년 9월 7일.

第 4 章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實態

第 1 節 組織暴力의 構造

1. 組織의 數와 構成員數

폭력조직의 수와 그 구성원의 수는 폭력조직의 전체적 규모를 알아보는데 중요한尺度가 된다. 그러나 폭력조직을 정의하고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폭력조직 자체의 秘密性과 隱密性으로 인하여 그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⁷⁰⁾ 이는 點組織化되어 있고 가입이나 연령 순으로 次數가 정해지나 조직자체서 조차 3-4개 차수 이상 선배만 되어도 후배의 인상착의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하부 조직원이 상부조직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이것이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관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여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범행도 개인적,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기도 하고 정치권, 언론, 수사기관 등에 광범위한 옹호세력, 예컨대 사업가, 유흥업주, 오락실주 등 경제적 옹호세력과 법조관계자, 수사기관 관계자, 행정단속공무원 등 관료적 옹호세력 및 정당 또는 관변단체 구성원 등 정치적 옹호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합법을 가장한 경제활동, 불법과 합법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활동하거나 일반시민과 구별되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조직의 정체를 偽裝하기 때문이다.⁷¹⁾

현재 수사기관에서 파악하는 인원 대부분은 행동대장급 간부 인원만을 算定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부 행동대원까지 포함하면 조직원수는 몇배로 늘어날 수 있다.

70) 정진수, 앞의 책, 55면.

71) 김윤환, “조직폭력배 수사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경찰대학 고위정책과정 논문집」, 2000, 1272-1273면.

1999년 1월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관리대상⁷²⁾ 폭력조직수와 조직원수는 <표12>와 같다.

<表12> 地域別 暴力組織數와 構成員數

구 분	총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조직수	233	43	9	34	16	5	25	17	9	8	17	6	15	24	5
구성원수	4,859	410	153	727	184	278	358	585	508	193	374	257	324	404	104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내부자료, 1999.

<표12>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폭력조직이 전국적으로 散在해 있으나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유흥업소가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수가 많게 발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에는 1992년도만 해도 31개 조직에 1,174명으로 전통적으로 많은 조직과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9년도에는 9개 조직에 508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폭력조직이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상황에 따라 부침과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도 우리나라 전체 군소조직을 포함한 전국의 조직폭력배는 404개과에 모두 1만 1,500여명 이었으나,⁷³⁾ 2000년도 전국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전국 212개과

72)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의 책임하에 기존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및 검거된 신흥조직폭력배와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를 중심으로 재범자가 있는 조직폭력은 물론 재범사실이 없으나 활동재개가 우려되는 조직 및 신흥조직은 검거당시 범죄사실, 조직결속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폭력조직으로 활동이 가능한 조직,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 등을 중심으로 최초 활동양상과 동향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정밀진단 심사 후 엄선하고 있다.

73) http://hammer.co.kr/10/soc_5.htm

4,59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방경찰청별로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경찰청으로 17개과 666명이며, 경기 28개과 621명, 전북 17개과 590, 대구 18개과 417명, 서울 36개과 372명, 부산 22개과 342명, 충남 22개과 328명, 경북 6개과 251명이었고 조직별로는 대구 동성로과 조직이 110명, 전남에 무등산과 92명, 국제 PJ과 83명, 충장 OB과 70명, 경기 남문과 70명, 충북 화성 과 70명 등이었다.⁷⁴⁾

그리고 2001년 현재 전국의 폭력조직은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특별관리대상자는 181개과 745명⁷⁵⁾이다.

2. 目的과 組織名

폭력조직은 대부분 유흥업소, 오락실 등 이권업소에 대해 자신들의 이권장악과 보호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떤 조직은 타지역 사람들에 의한 지역보호, 조직원간 친목도모 등을 내세우나 결성 초기 목적과는 달리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대부분의 폭력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 생계차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享樂的 및 蓄財的 차원으로 이익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직업의 한 방편으로까지 삼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명칭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우려하여 조직 명칭을 作名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대부분의 조직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어진 지명이나 두목의 이름을 따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원들 합의하에 작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3. 階級과 呼稱

조직폭력범죄의 구성원은 현행법상 수괴, 간부, 구성원으로 분류된다. 통상 계선조직(Line)으로 두목(수괴), 부두목, 중간보스, 행동대장(이상 간부급), 행동대원 등으로 분류하고, 그외 참모(staff)조직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고문, 자금책(각

74) 국민일보, 2000년 10월 22일.

75) 조선일보, 2001년 4월 21일.

간부급)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계급과 승진체계가 없는 조직은 속성상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끊임 없이 타조직과 싸우면서 실전경험을 쌓고 그 공에 따라 대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와 같은 체제와 명칭으로 부여하면서 운영되기도 한다.

아래 분류는 통상 수사기관에서 폭력조직을 파악하여 계보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명칭으로 실질적으로 조직내에 부르는 명칭은 아니다.

1) 두목

두목이란 구성원들을 직접 통솔하는 자 또는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를 말하는데 실제로 두목은 오야붕, 큰형님 내지 첫째 형님이라 부르고 그 밖의 자에게는 형님 또는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지휘자를 두목으로 불 것인지 고문이나 배후인물을 두목으로 불 것인지는 대해서는 명백하지는 않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실태와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폭력조직의 최연장자가 두목 내지는 고문이 되고 있다.

2) 부두목

부두목은 두목의 지휘를 받아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고, 두목 부재시 임무를 대행하여 부하를 지휘 통솔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은 일정치 않다. 일부 대형 폭력조직은 大系派 아래 소속된 소계과의 두목 또는 참모역을 맡는 경우도 있다.⁷⁶⁾

3) 행동 대장

유능한 행동대장만 있으면 행동대원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폭력의 구성원 중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위치이며, 일선에서 행동대원들을 거느리고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행동대장은 두목, 부두목, 행동대원들간 의사연락을 담당하며 두목, 부두목은 하부 행동대원을 직접 상대하지는 않는다.

76) 정진수, 앞의 책, 94면.

행동대장과 행동대원 사이에는 행동책, 조장 등으로 불리는 행동대 중간간부가 존재하는 경우도 간혹있다.

4) 행동 대원

일명 '똥마니'라고 불리고 있으며 행동대원은 조직의 하부 구성원을 말한다. 이들은 범행현장에서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을 자행한다. 행동대원간에는 나이, 조직가입시기, 선후배 관계, 범죄경력 등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확립되어진다.

5) 추종 세력

수사기관에서 폭력조직 계보 파악시 소위 추종세력이라고 분류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들은 조직 가입시기가 일천하다든지, 행동대원들을 따라 다니지만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처벌하기가 곤란한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조직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배경을 업고 개별적인 이익 추구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6) 고 문

외형상으로는 조직활동에서 은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조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치 못하고 조직을 배후에 업고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어떤 경우는 조직과 무관하였던 자가 사실상 조직과 손을 잡고 유착되어 가면서 후원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로 두목 등 간부급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조직활동에 대한 고문 역할, 문제 발생시 로비 등을 통한 해결자금 조달 등을 행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위법증거 사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4. 活動 區域(領域)

활동영역이란 각 조직 구성원들이 먹고 살만한 자금을 포함, 크개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벌이는 활동의 범위를 말하며, 관할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할구역(나와바리)은 폭력조직원들의 생활터전이며 조직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다른 조직원이 관할구역을 침범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이 폭력조직의 불문율이다.⁷⁷⁾ 대부분 폭력조직의 활동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역내의 각종 이권개입에 용이하고 직접적인 영향력 범위에 두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리가 있고 이권이 있는 곳이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구역을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은 이런 활동구역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이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소 활동구역을 일정한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주변동향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순찰동안에 이상한 동향 즉 타 조직원의 침입 등이 있을 시는 즉시 활동구역내의 술집, 다방, 당구장, 월세방, 여관, 합숙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대처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비상시의 모임 외에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임은 업소의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선배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말 등지에는 학교운동장 등지에서 축구 등 운동시합을 하면서 조직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기도 하고 합숙훈련, 야유회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5. 行動 綱領

폭력조직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으나 검거당할 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우려하여 대부

77) 조선희, 앞의 책, 151면.

분 문서화하지 않고 있다.

조직의 강령은 두목 등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적대관계에 있는 조직의 제압, 조직의 이권 사수, 조직배신자에 대한 보복 등이 요체를 이루고 있다. 특히 폭력조직은 사회내의 어떠한 조직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절대명령과 절대복종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어떤 자는 이를 보고 군대식이라 표현하고 있다.⁷⁸⁾ 이처럼 강령은 다른 어떠한 사회적 강령보다 우선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가혹한 제재가 뒤따른다. 예컨대 조직을 배신하여 밀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가혹한 제재가 가해진다. 반면 강령이 엄격한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상부상조와 사회보장적 조치가 철저하다. 조직을 위해 일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검거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변호인의 선임, 교도소 영치금의 제공 등을 조직에서 책임지고 맡아 준다.⁷⁹⁾ 따라서 조직원들은 일반사회규범을 무시하고 조직의 강령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범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⁸⁰⁾

수사상 드러난 行動綱領들을 살펴보면 ‘선배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선배에게 각듯이 예의를 갖춘다’ ‘선배를 하늘같이 모셔라’ ‘남자답게 놀며 타지역 건달들에게 당당하게 처신한다’ ‘활동지역을 타지역의 세력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다’ ‘출동시 검정색으로 정장하여 통일된 모습으로 위력을 갖춘다’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절을 한다’ ‘조직을 배신할 때는 보복한다’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등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하나 별도의 행동강령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⁸¹⁾

78) 김준규, 앞의 책, 208면.

79) 신광식, “조직범죄요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4면.

80) 조선희, 앞의 책, 15면.

81) 최병민, “한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3면.

6. 選拔 加入과 脫退

조직원을 선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방식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학교, 고향의 선·후배 중에서 쓸만한 사람, 소문으로 누구라고 하면 알 만하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포섭하거나, 드물지만 타 조직에서 영입하는 경우,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자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가 조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후 그 상대방의 대응방식을 보고 포섭한다. 이렇게 하여 선발한 자는 바로 가입시키지 않고 동년배 조직원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수습기간을 거치는데 이 수습기간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폭력을 과감히 행사할 수 있는가, 언제라도 연락하여 동원이 가능한 가, 칼을 잘 쓰는가 등 여러 가지 판별하여 선발하고 있다.

조직의 가입은 강요에 의한 경우와 자의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자의에 의한 경우이다.⁸²⁾ 즉 선배나 동료의 권유 등에 의하여 스스로 조직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강요에 의한 경우는 예컨대 그가 신세를 진 적이 있거나 조직에서 특별한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원들의 가입동기에 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았다', '웃 잘입고 시내에서 물려다니는 선배들이 멋있게 보였다', '나쁜 일 인 줄 알았지만 사나이로서 가오를 재고 싶었다', '우쭐대는 기분에서였다', '전에 구타당한 애들의 반대파에 가담하고 싶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영상매체나 인쇄매체에서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를 동경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조직에서 가입을 위한 절차는 동기들이나 한 두해 선배들이 술자리를 마련하여 인사를 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소개받는 정도가 많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가입신고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특수한 조직에서는 혈서를 쓰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경우, 충성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82) 강지원, 앞의 논문, 164면.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없이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폭행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경우가 있으며⁸³⁾ 특히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가혹한 제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은파의 행동강령이나 지침에도 보면 '조직을 이탈하는 자는 가차없이 아킬레스건을 끊는 등 제재를 가한다' 등이 있다.

第 2 節 組織의 保護 · 維持

1. 組織의 暴力行使

조직폭력배들의 폭력행사는 조직원들의 돌발적인 폭력의 사용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의 원칙에서 벗어난 폭력(소위 '칼부림' 포함)의 사용은 드물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조직간에 얼굴이 알려져 있고 또 대립보다는 세력끼리 상부상조를 통해 이익차원에서 조용히 일을 해결해 가는 경향이 있다.

- ① 타조직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에 폭력이 행사된다. 그 마찰은 하부조직 또는 상부조직에서 마찰이 생긴 경우와 이권을 놓고 다른 조직과 다툼이 생긴 경우인데, 이러한 때에는 폭력이 대대적으로 행사된다.
- ② 이권의 청부에 개입된 경우, 조직의 힘으로 세를 과시해도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을 때이다. 청부폭력회사의 형태를 취한 폭력조직은 이권에 개입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접근, 협박을 한 다음에 이에 불응하면 실제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무자비한 폭력이 사용된다.
- ③ 조직내 자체에서 갈등과 도전이 있는 경우이다. 이는 하부조직이 상부조직에

83) 중앙일보, 2001년 5월 10일.

게 반기를 드는 것과 조직원 개인 또는 일부의 하부조직이 이탈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위에서 말한 경우보다 더 잔혹한 폭력이 행사된다.

④ 이외에도 고의적으로 다른 조직과 시비를 일으켜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폭력조직의 생리상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조직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은 조직의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 자기조직의 힘을 다른 폭력 조직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 갈 자격자를 만들고 조직원의 실전경험과 결속력의 배양을 위한 것⁸⁴⁾이라 할 수 있다.

2. 携帶 · 使用 武器

조직폭력배들이 휴대·사용하는 무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생선회칼, 일본도, 야구 방망이, 각목, 가스총, 사제총, 공기총, 손도끼, 접는칼 등을 그들이 집합장소에 보관하거나 차량 등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몸에 휴대하기도 하다가 유사시 사용한다. 최근에는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권총 등 총기류가 밀반입되면서 상당수 러시아제 총기로 무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는 국제 총기밀매 조직중에는 러시아 마피아와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가 대표적이고, 대만과 홍콩 필리핀 태국의 폭력조직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서부터 한-러간 무역이 본격화되자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에 거점을 둔 마피아가 부산항을 이용해 보따리 무역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량이 총기가 밀반입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1994년 8월 29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권총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는 러시아 선원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으로부터 권총 1정과 실탄 100발을 구매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3. 資金의 調達 · 管理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자금원이 필요하다. 자금조달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조직원들이 받아오는 상납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

84) 점승헌, 앞의 논문, 134면.

다. 그러나 최근에는 업소를 직접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을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자금력이 있는 자들을 자금책으로 삼아 이들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경우 자금책들은 외형상 폭력조직과 전혀 관계없이 보이나 조직내에서 어엿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도 많다.

자금을 조달하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활동구역내에 있는 유흥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조직의 구성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업소에 도자기, 그림 등의 물품을 강매하기도 하고 도박장을 개장하여 고객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조직들은 호텔 오락실의 지분을 갈취하거나 이를 경영하여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입찰 등에도 개입해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 그밖에 타인의 채권채무를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민사문제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하여 금전을 갈취함에 있어서 주먹이나 무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은연중에 알아서 처신하도록 위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단체 등을 설립하여 합법을 가장하는 경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자금의 조달과 그 관리방법은 조직의 규모나 두목의 업무 스타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조직의 기밀 사항으로 되어 있어 하부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행동대장급 이상의 간부인 경우에도 두목이 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자금 취득활동을 직책별로 보면, 대체로 직책이 높을수록 큰 이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두목급인 경우에는 오락실이나 건설업체 갈취 등 큰 이권에 개입하고 있고, 유흥업소나 합법을 가장한 기업체를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두목이외의 행동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두목의 결정이나 조직간부들의 협의에 의하여 이권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활동구역내의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등의 유흥업소에 영업부장, 전무 등으로 취업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업소로부터 상납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말단의 행동대원들은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매우 드물다. 조직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두목이 행동대장 등 간부급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조직의 활동자금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유흥업소에 고용된 조직의 간부 등 구성원들이 조직에 상납금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행동대원들은 조직의 두목이나 간부급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식사비나 목욕비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무전취식, 금품갈취 등의 범행을 일삼기도 한다.

구성원의 합숙비, 조직의 회식비, 사건발생시 변호사 선임비, 치료비, 교도소 영치금 등 조직의 관리비는 두목 등 조직의 간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목, 부두목 이하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받아 이에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직자금에 대해 조직별로 재무를 보는 자를 두어 관리하는 조직도 있지만 군소조직은 없고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⁸⁵⁾

4. 他地域 및 他組織과의 連繫性

폭력조직은 일정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별다른 적대관계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일정지역 내에서 두개 이상의 조직이 공존하면서 서로 세력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폭력조직이 다른 조직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연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같은 지역내에서 활동 구역이 다른 조직과 연대하는 경우, 인근 도시 등 타지역의 조직과 연대를 하는 경우인데 타지역의 조직과 연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조직의 조직원들이 오면 손님으로 예우하여 숙소제공 등 각종 편리를 제공을 하거나 그 조직의 구성원이

85) 정진수, 앞의 책, 66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는 경우에 도피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폭력조직은 최근 광역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지방의 조직이 서울과 주변도시로 진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⁸⁶⁾ 예컨대 전남 광주 및 목포, 전북 전주 및 이리 등 호남의 폭력조직들이 서울과 그 주변도시를 점령한 뒤 출신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새로운 구성원의 충원을 그 곳에서 의존하는 등 상부상조하는 형태를 보여 오다가, 서울 등지로 진출한 조직의 세력이 급성장하게 되자 지방조직이 서울조직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조직의 광역화 내지 대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⁸⁷⁾ 그리하여 대도시와 지방간의 상호연계가 이루어져 사건이 나면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을 오는 사례도 많다.⁸⁸⁾

5. 擁護(庇護)勢力

폭력조직들은 그들 활동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비호해 줄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접대와 향응, 금전제공 등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리는데 이들 비호세력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선거유세에서 청중을 동원하고 당권을 쟁취할 때 조직폭력원을 동원하여 각종 선거활동에 참여케 한 후 대가로 조직을 비호해주는 정치세력이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안에서도 빈번하게 존재해왔다. 둘째, 유흥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에서 종사하는 자가 조직활동 자금을 제공해주고 이를 대가로 보호를 받는 사회적 비호세력이 있으며, 셋째, 금전 등의 매수로 독점이나 면책을 가능케 해주는 공무원 같은 관료적 비호세력인데 이들은 폭력조직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나 행정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매수하여 비리를 저지르게 하거나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사건무마, 묵인, 수사기밀 누설 등을 유도한다.

이들 옹호세력들은 폭력조직의 구성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조직의 두목이나

86) 김주학, “조직상습 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1990), 439면.

87) 강지원, 앞의 책, 217면.

88) 김주학, 앞의 책, 439면.

간부급과 연계되어 조직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호세력들의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유흥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⁸⁹⁾

第 3 節 活動 類型

폭력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금력이 많은 조직은 규모면에서도 대형화를 이루고 있고 자금력이 없는 조직의 두목은 자기조직에서 무시당하거나 제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두목의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직원들이 이합집산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권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한 활동유형은 과거 전통적인 유형에서부터 최근에는 고리대금업, 청부 폭력, 벤처기업 운영, 주가조작, 경매개입 등 사회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있는데,⁹⁰⁾ 대표적인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遊興業所 就業, 囑取, 經營

조직폭력의 활동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힘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호텔나이트클럽, 카지노, 룸싸롱, 안마시술소 등 대형 유흥업소는 일반인의 경영이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임대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과도한 지분을 요구한다거나 동업형식으로 하다가 쫓아내는 경우가 있고, 영업부장직을 맡아 조직원을 웨이터 또는 보조로 투입하거나 취객의 폭력행위에 개입하여 이를 제압하고 업소의 영업권 지분이나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류공급권 확보하고 있으며,⁹¹⁾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구성원 전

89) 정진수, 앞의 책, 71면.

90) 허경미, 앞의 논문, 70면.

91) 제주일보, 2001년 2월 8일.

원을 조직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 遊興從事者 供給業 獨占 및 喝取

유흥업소에서 필수적인 유흥종사자(댄서 등)의 공급권을 장악하고 이들의 수입을 갈취하는 형태이다. 이들 공급은 일명 '프로덕션'이라는 곳에서 하며 관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 유흥주점 종업원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종업원 공급업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불법취업시킬 목적으로 입국시킨 후 각종 율락행위를 하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3. 秘密 賭博場 開場

이른바 '하우스'라는 사설 비밀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을 유치하고 '고리'를 뜯거나 아니면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고 있다. 도박장들은 보통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하우스장'과 사람을 포섭해오는 물색조, 자금책인 '꽂지'가 주축을 이루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망을 보는 사람, 그리고 직접 도박을 하는 멤버 4명 등 10 -15명으로 한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⁹²⁾ 최근에는 필리핀, 마카오 등 해외에까지 도박장소를 넓혀가고 있다.

4. 遊技場業所 喝取

슬롯머신(일명 빠친코)은 수입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갈취 형태로는 오락실에 얼마간의 돈을 투자하고 과분한 지분을 요구하거나 투자도 하지 않고 업소 보호명목으로 공동지분을 요구하기도 하고 배당금을 착복하거나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또한 신규 영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⁹³⁾

92) <http://new.useful.co.kr/sexpia/part2/dobak.htm>

93) 최근 서울시내 불법 도박업을 하는 오락실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도, 폭력조직 근절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을 구속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단속에서 자금추적을 병행한 결과 일부 오락실이 실제로 폭력조직의 자금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5. 零細露店商 囑取

폭력조직이 영세업소나 노점상을 갈취하는 경우 관할구역내의 업소로부터 각종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물품강매, 무전취식, 자릿세 징수, 주류 공급권 확보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6. 麻藥類 密賣 및 密輸

마약 밀조와 거래 활동은 마약류 사범들의 요청에 의한 경우와 조직 자체에서 거래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성행하는 이유는 마약류에 대한 경쟁이 제한적이고, 대체 물질의 경쟁 위협이 없어 상당한 이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이며 조직폭력의 활동 영역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많은 자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⁴⁾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교역하는 것을 기화로 농산물 등 밀수에도 상당수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밀성으로 인하여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7. 請負暴力・民事介入暴力 行使

일반인들의 채권 채무에 개입하여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무런 이해관계나 원한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청부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청부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신납치, 감금, 폭행 등은 물론 살인까지도 하는 등 범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민사개입의 유형은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오락실은 불법 도박영업으로 연평균 30억원 가까이 수익을 올려왔는데, 자금추적 결과 이 오락실의 실제 주인은 폭력조직 목포서산과 행동대장 여모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폭력조직들의 사업영역은 대형 유흥업소와 불법 오락실은 물론 사채업과 건설업, 심지어는 벤처업계까지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http://www.imbc.com/newsinnews/notes00/actual/actual4_001219.html

94) <http://aids.hallym.ac.kr/d/drug/news9798/news14.html>

경우, 반대로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이행 연기를 얻는 경우, 공장 등 부도가 난 회사는 소액채권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수십명의 조직원을 동원, 공장물건 등을 빼내어 처분하거나 사장을 협박하여 공장의 영업권 등을 인수받아 대행처리, 그밖에 민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관계의 성사 또는 해결을 위해 폭력이 동원되는 경우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⁹⁵⁾ 이러한 활동을 하는 폭력조직은 심부름 센터 등의 위장 간판을 걸어 놓고 소액의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소규모 조직에서부터 대형 유흥업소에 기생하면서 굶직하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대규모 조직들이 수백개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8. 建設業界 浸透

조직폭력들이 가장 선망하는 있는 분야중 하나는 건축업계로서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조직자금을 만들기 있기 때문인데 갈취 유형으로는 건축회사에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와, 스스로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건축회사에 파견된 조합원은 대개 업무상무 또는 업무이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이들은 주로 폭력을 동원해 입찰을 따내는 등의 수법으로 기여하고 이에 대한 사례비를 받아낸다.

조직폭력 세력이 직접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창틀새시, 변기 등의 내장재와 위생, 냉난방 시설의 시공권을 따낸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를 다시 동종업체에 재하청을 주어 이권을 챙기는 수법을 쓴다. 이밖에도 조직폭력 세력이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동업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접근해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거나 은행에 당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일단 독점한 뒤, 이자를 연체하면 업주를 납치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기업을 포기하게 하여 기업을 인수하기도 한다. 또한 분규가 있는 건물의 일부 세입자의 권리를 양수하여 입주한 다음, 다른 권리자를 폭력으로 배제하고, 건물의 관리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95) 강지원, 앞의 책, 197면.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여 그 부동산 등기상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부동산을 제값에 처분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이는 1993년 9월 서방과의 방계조직인 방배동파가 인천의 월드코아 백화점의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던 한일은행으로부터 51억원에 백화점을 매입하고 계약금으로 5억원을 지불한 뒤 은행의 담당자를 폭행하여 백화점을 인수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⁹⁶⁾

9. 私債業

사채업은 금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므로 채무변제를 둘러싸고 항상 마찰이 있게 마련이고 여기에 사채업과 조직폭력배는 친할 수 밖에 없다. 과거에는 사채업자가 악성채권 회수를 위하여 조직폭력배들에게 청부폭력을 부탁하여 행사했으나 최근에는 사채업자에게 고용되어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거나 나아가 사채사무실을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조직폭력들이 채권회수 수법을 보면 채무자 납치,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변제를 받거나, 채무자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채무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는 등 은근히 공포심을 유발하여 돈을 변제토록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기 때문이다.⁹⁷⁾ 그러나 요즘은 직접적인 폭력도 행사하고 있다.

10. 其他 類型

이외에도 노사분규 개입, 종교분쟁 개입, 선거운동 개입, 부동산업 진출, 인신매매, 경매 개입 등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개입하고 있다.

개입 사례들을 살펴보면 회사의 주식을 소량 매입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행사로 말썽을 부리거나 고의적인 발언, 임원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부당한 금액을 받아 이권을 챙기는 총회꾼, 자금난에 빠져

96)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00.

97) 최진규,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0면.

있는 회사 등에 용자를 알선해 준다거나 어음을 할인해 준다는 감언 등으로 어음으로 수표를 발행케하여 이것을 편취 자금원으로 어음, 수표 용지 등을 팔아먹기도 하며, 어음사기단에 의하여 편취된 어음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회수하여 이것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고 신문잡지 등을 발행하여 회사 등의 비밀내용이나 임직원, 저명인의 사생활 등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위반 신고자의 보상금을 노려 관할내에서 활동을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조직폭력활동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은 거의 없다. 바꿔 말하면 조직범죄집단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나 활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침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폭력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이들의 활동은 경찰의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면 조직범죄의 활동영역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표13>와 <표14>은 2000년 한해동안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여 활동분야별과 범죄유형별을 분석한 것인데 아직까지 조직폭력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인 유흥가, 서민상대 갈취, 건설공사 개입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마약, 밀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13> 活動分野別 組織暴力輩 檢學 現況(2000년)

구분	계	유흥가	채권 채무 사채업	건축 등 공사 관련	도박 등 사행행위	서민상대 갈취	인신 매매 등 용역	경제이권	기타	
계	3,016	1,812	136	99	43	274	24	73	555	
신홍	조직	1,618	972	112	84	27	223	22	65	113
	조직수	183	112	19	11	4	22	3	6	6
출소재범	1,098	619	12	9	12	36	1	6	403	
미검수배	300	221	12	6	4	15	1	2	39	

자료 : 警察廳, 警察白書, 2001, 151면.

<表14> 犯罪類型別 組織暴力輩 檢學 現況(2000년)

구분	계	업소 업체운영	갈취 폭력	청부 폭력	보복세력 다툼	인신 매매	마약 밀수	기타
계	3,016	130	1,788	139	180	29	12	738
신흥 조직	1,618	106	1,228	93	69	24		94
	조직수	183	11	126	15	8	6	75
출소재범	1,098	11	379	38	78	1	11	580
미검수배	300	13	181	8	33		1	64

자료 : 앞의 책, 151면.



第 4 節 最近의 動向

1. 企業化와 新種犯罪로 領域 擴大

과거의 전통적인 조직폭력의 활동유형이었던 유흥업소 갈취, 연예인 상대 갈취, 도박장 개장 및 운영, 주류공급 독점, 관리비 명목의 금품갈취 등에서 더 나아가 건설업계 침투, 부동산업 진출, 마약밀매, 민사개입폭력, 사채업, 기업대상폭력, 경매입찰개입, 노사분규 및 종교분규 등에 개입하고,⁹⁸⁾ 최근에는 벤처기업에 합법적 진출, 금융업 운영, 증권시장 증권조작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흔히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구역을 침범한 경쟁 조직과 유흥가나 대로상에서 흥기를 휘두르는 강력사건이나 집단 패싸움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조직폭력은 '영역 다툼형', '칼부림형'에서 '합법 기업형', '마

98) 오세경, 「조직범죄와 사회공생단체」,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법무연수원, 1992, 497면.

피아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조폭'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처럼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다.

옛날처럼 영역을 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저급한 '불량배'이거나 '양아치'로 취급받는 것이 '21세기 조직폭력배' 양상이다. 즉 '갈취형'에서 합법적 사업가를 가장한 기업형 조직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자 이를 활용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빼내 현금카드 겸용 은행신용카드를 예금주 몰래 만들어 국내와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身上情報를 캐낸 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돈을 인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불법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정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조직폭력 이태원과 두목 사모는 술값을 카드로 계산하는 고객에게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해 매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1998년 3월부터 1년 동안 특별소비세 등 세금 14억 1,000여 만원을 포탈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카드깡 전문조직이 불법 할인한 매출규모가 1998년의 전체카드매출액 63조 7,000여억원의 1.5%선인 1조원 대이고, 이에 따른 탈세액도 3,8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서류를 위조하여 부적격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여권을 위·변조하여 거래하는 조직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여권 위·변조 조직은 대략 100여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위조·운송·판매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울의 종로, 낙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5~6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위·변조된 여권은 주로

출입이 규제된 일본에 재입국을 희망하는 내국인 및 국내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이나 중국동포에게 판매되고 있다. 1993년 이후 1997년 말까지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46건으로 사진을 교체하는 수법이 1,001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교역 확대 및 개방화정책에 따른 향락소비풍조 및 무분별한 외제 품 선호경향 등으로 인한 밀수도 늘어나고 있어 조직범죄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 주고 있다. 밀수품목도 과거에는 주로 금괴나 보석 등 귀금속류와 전자제품 위주에서 최근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작기계류, 농수축산물, 한약재 등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밀수 조직들은 대개 국내에 거주하다가 외국으로 이주한 화교나 재외교포들이 홍콩 및 미국 등지에서 전문밀수조직을 만들어 국내판매책 등과 환치기수법으로 밀수대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공항밀수보다 해상밀수가 더 많이 적발되고 있다.

한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단속된 밀입국자는 2,158명인데 이중 151명은 외항선박에 탑승하여 밀입국을 기도하였고, 나머지 2,007명은 소형어선을 타고 서해안이나 남해안을 통하여 밀입국을 시도하였다. 관계기관은 국내의 조직범죄들이 마피아나 삼합會 등과 같은 외국의 조직범죄와 연계하여 밀입국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⁹⁾

2. 組織員의 底年齡化

조직범죄의 시발점은 청소년이다. <표15>에서 보는 것처럼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70%이상을 차지하는 등 폭력조직원들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전국규모의 거대조직, 각 지방의 군소 조직 외에도 10대들이 주축을 이루는 조직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중학생들도 상당수 가입되어 있다.

99) 허경미, 앞의 논문, 81면.

이는 조직폭력집단을 미화하는 대중매체의 잘못된 표현방식과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이며 또하나의 조직폭력집단이 전국규모의 거대 조직화되어 가면서 조직의 세를 불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 10대들은 사리판단이 미약한 관계로 아무런 이성적인 판단없이 흉폭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表15> 組織暴力輩 年齡別 現況(1999년)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2,855	890	1,238	589	120	18
신흥조직	1,229	273	574	284	86	12
출소재범	1,398	581	562	221	28	6
미검수배	228	36	102	84	6	

자료 : 警察廳, 警察白書, 2000, 132면.

3. 海外 進出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편승하여 일부 조직의 구성원들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며 미국, 일본 등 해외거주 교민지역에 까지 폭력조직의 결성을 추진하거나 현지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고 홍콩, 마카오 등지의 해외 도박장에까지 진출하여 국내 일부 부유층 인사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조직범죄 국내 유입의 양상도 중국, 러시아 범죄조직들로부터 마약거래, 총기밀매, 등과 같은 조직자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범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996년도에 우리 정부는 호주 정부로부터 뜻밖의 공문을 받은적이 있는데 내용은 “한국 출신 조직폭력배들이 불법을 일삼으며 호주국민과 교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한국 경찰관을 정식으로 파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97년 1월 시드니의 한 식당 앞에서 한국 폭력배들간 살인사건이 발생, 3명의 한국인이 호주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는 폭력조직들이 국내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직폭력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꼽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마카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등 10여개국. 교민들이 많거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나라들이다. 80년대 미국·일본·남미에서, 1990년대 들어 호주·중국·동남아 등지로 급속히 팽창하는 추세라고 檢·警 수사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칠성과 두목 이모(57)씨가 1980년대 야쿠자 두목과 의형제를 맺는 등 부산 폭력조직과 유대가 깊고 범서방과 두목 김모(52)씨도 야쿠자와 깊은 관계이며 범서방과 부두목 이모씨는 일본에서 파친코 영업으로 갑부 대열에 올랐다고 한다. 미국에서 LA와 뉴욕의 한인 갱단의 활동은 잔인한 수법으로 악명을 얻은 지 오래다. 1989년 '3대 패밀리'중 하나인 'OB파' 두목 이모씨가 미국으로 이주한 이래 최근까지 상당수 조직폭력배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도 한국 출신 조직폭력배 소유의 대형 카지노 4-5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두목급 조직폭력들이 출입한다고 한다.

1998년엔 '슬롯머신 업계 대부'로 알려진 정모씨가 미화 455만달러를 빼돌려 마닐라 S호텔 카지노에 투자했다가 구속되기도 했고 1999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이 한국인 불법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을 단속, 20여명을 검거했다.

2000년 1월에는 범서방과 부두목 이모(47)씨가 사채로 모은 돈으로 인도네시아에 레스토랑을 개업, 이주하기 직전 검거되기도 했다.

<표16> 國內 組織暴力 海外 進出 事例

국 가 별	내 용
미국·캐나다	- OB과 두목 이모씨 등 조직폭력배 다수 이주 - LA, 뉴욕 등 한인 갱단 활동.
일 본	- 칠성과 등 야쿠자 연계. 도쿄·오사카 무대로 다수 활동 - 서방과 부두목 이모씨, 파친코 운영.
호 주	- 1997년 1월 시드니서 한인 살인사건 발생 등 폭력사건 빈발.
인도네시아	- 1997년 광명사거리과 두목 문모 도주 - 2000년 도박장에서 한인 14명 체포.
필 리 핀	- 1998년 정모 카지노 투자 적발 - 1997년 도박·골프·섹스 관광단 적발.
중 국	- 상해·연변에 다수 진출.
태국·홍콩	- 단란주점, 도박장 운영 등 첩보.
마 카 오	- 카지노 원정 도박 등 적발.
과테말라	- 2001년 1월 교민 상대로 협박, 돈 뜯어낸 9명 검거, 7명 국내 압송.
멕 시 코	- 2000년 8월 멕시코 경찰, 한인상대 원정 청부폭력단 3명 검거.
아르헨·브라질·칠레	- 교민상대 폭력조직 활동 등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

자료 : 조선일보, 2001년 2월 5일.

第 5 章 組織暴力에 대한 對應 方案

우리나라 조직폭력에 대한 문제는 해방 이후 줄곧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그때마다 조직폭력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있어 왔다. 특히 5·16이나 10월 유신, 5·17 등의 정치적 급변기에는 두드러졌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民心收拾 등을 목적으로 한 非常時局 하에서의 비상조치로서 특별재판제도나 國土建設勸 勞役, 三清敎育 등의 특이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군 대작전식 발상이라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수반되었고, 또한 이러한 방식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¹⁰⁰⁾ 그리고 이러한 강압조치가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조직적 성장에 제어 역할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신장으로 더 이상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인권을 무시한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조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과거부터 강력한 처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이 없어지지 않은 걸 보면 근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폭력조직에 대한 단속 행태를 보면 일제검거식, 단발적 일회성 행사식, 수사기관의 실적위주 단속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직폭력에 대해 내성을 키워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본질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직폭력 집단은 아직은 외국의 조직범죄집단처럼 공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생성과정을 보더라도 지역의 패거리가 모여 현재의 조직폭력집단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대부분이 지역별 군소조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이 최근의 여러 사회상황에 편승하여 비약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조직자금을 바탕으로 외국범죄집단과 연계의 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100) 한인섭, “조직폭력범죄의 법적통제 및 조직폭력범에 대한 교정 처우모델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99), 297면.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그래야만이 실효성과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논문은 조직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第 1 節 法·制度的인 對應 方案

1. 現行法 整備 및 統合對策法 制定

현행 조직폭력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 법조문으로는 형법 제114조 제1항을 들 수 있는데 동조문은 범죄단체의 조직이라는 제목하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본죄의 형사정책적 근거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직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체조직과 결합된 특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동조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죄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본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¹⁰¹⁾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범죄단체 구성요소에 관한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동조항이 조직범죄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오히려 본죄는 여러 가지 이론 구성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동 조항은 구성요건이 개별화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할 것을 벌하고 있다. 그러나 죄

101) 大判 1985. 10. 8. 85 도 1515.

형법정주의는 구체적인 행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만 하면 그 목적인 죄를 실행하여 결과를 야기한 기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가 있는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살인을 하려고 다수가 결합하여 어떤 조직체를 형성하였을 때에는 살인의 예비·음모(제255조)의 단계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한 내란의 목적으로써 결속되었다면 이는 내란의 예비·음모(형법 제90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본조 1항은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살인한 경우 제255조의 적용, 내란의 경우 제90조 1항의 적용의 문제와 충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조 1항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된다.¹⁰²⁾

이처럼 범죄단체의 조직이나 이에 대한 가입행위를,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리상 일종의 예비·음모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수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는 것이므로 입법론상 불합리하다. 더욱이 예비·음모죄가 독립된 가벌적 구성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죄에 있어서는 양자는 적용상의 모순 내지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¹⁰³⁾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¹⁰⁴⁾

그리고 조직폭력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인지,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 후 탈퇴하지 않고 활동하는 한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인지 여부가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즉시범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102)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하)」, (일조각, 1982), 258면 이하.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는 이재상 형법 각론 Ⅱ, 25면.

103) 김창균, “비범죄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37면.

104) 독일 형법 제129조(Bildung krimineller Vereinigungen)는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문제점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폭력조직의 결성이나 가입시기가 명료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범죄단체의 결성, 가입시기를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까지 끌어올려 간단하게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범죄단체조직이나 가입죄로 처벌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아무리 조직폭력 구성원으로 활동을 한다해도 구체적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한 다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단체라는 것은 그 속성상 그 조직 내에서 지위의 상승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승진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¹⁰⁵⁾있어 폭력조직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폭력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부분은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타국가의 조직범죄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조직범죄규제법규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규는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법이라고 할 수 있다. *RICO*법은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조직이 노동조합에 침투하거나 합법기업을 침식하는 경향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RICO*법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조직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RICO*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조직범죄 활동의 반복 또는 불법채권의 회수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 재투자를 제한하는 불법적 자금에 대해 합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폭행·협박·사기·고리대금업 등의 수단에 의해 단체로부터 권익을 취득하거나, 단체를 직·간접으로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단체에의 불법한 사용, 불법적 자금의 합법적 취득공모 및 단체의 불법한 이익의 취득을 공모한 때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규정¹⁰⁶⁾하고 있어 조직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도 폭력단원이 행사하는 폭력적 요구 행위 등에 필요한 규제 및 폭력단의

105) 최병민, 앞의 논문, 65-66면.

106) 신광식, 앞의 논문, 58-59면.

대립투쟁 등에 의한 시민생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暴力團對策法을 제정하여 1992년 3월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단의 지정, 폭력적 행위의 요구행위의 금지, 對立 抗爭時의 사무소의 사용 제한, 폭력단 추방운동추진센터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¹⁰⁷⁾ 폭력단 대책법에 대해 폭력단에서는 언론기관으로부터 공격과 동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합법적 활동을 가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고나서 부터 폭력단 조직내부에서 부터 동요가 발생하고 조직원의 탈퇴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각국은 조직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범죄의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날이 갈수록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활동영역도 점차 합법적인 기업운영, 금융회사 설립 등에도 침투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범죄를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가칭 ‘組織犯罪 統合對策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규에는 부정수익금 몰수제도, 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證人保護制度 強化

조직범죄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크게 직접적인 피해자나 목격자, 범죄조직의 구성원 및 적대적인 조직의 구성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는 곧 효율적인 증거확보방안과 직결되고 이는 조직범죄수사 자체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증인에 대하여 수사개시부터 재판종료시까지 각단계별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증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률에 치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직에 의해서 위협에 처해진다면 증인의 신변보호는 물론 주거 재배치와 신원의 변경을 허용하는 증인보호 장치가 마련

107) 허경미, 앞의 논문, 89면.

되어야한다. 즉 증인에게 자신과 그 가족에게 새로운 신원을 부여하는 문서와 일시적 주거를 장만해 주고, 가구와 기타 개인 소유물을 새주거로 옮겨주고, 생계 비용과 취업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증인이 완전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證人保護프로그램(Witness Protection Program)에 입각해서 증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직범죄단속법에서는 조직범죄에 관계되는 증인 등의 보호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조직활동에 관여한 바 있는 피해자에 관한 검찰측 증인, 금후 증인이 되려는 자 및 그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리라는 판단될 때는 이러한 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정립되어 있다.¹⁰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6월 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조직폭력배들에게 살해되어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이처럼 조직폭력배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보복조치는 조직범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고, 조직폭력배가 감행하는 위법행위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조직범죄에 관하여는 시민의 다수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수사에 협력을 꺼리기 때문에 조직폭력배의 수사, 검거, 처벌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9년 8월 31일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적용대상 범죄는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범죄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제2항의 범죄 ③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적용범위는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3조).

108) 김대석, 앞의 논문, 71-72면.

한편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좌인은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제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기타 서류에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할 수 있다.

동법은 또한 비공개 증언을 허용하고 있다. 즉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 등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신변안전조치를 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법은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또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석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제14조). 그리고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나 그 가족을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의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제5조), 보좌인제도(제6조), 인적사항의 기재생략(제7조),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8조),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 등을 촬영하여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제10조), 증인신문의 비공개 및 피고인의 퇴정후의 신문(제11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되는 면이 있다. 우선 보좌인제도의 경우 신고자등의 안전과 원활한 증언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보좌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에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본래의 보좌인 선임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 설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전직이나 이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구조금제도와 신변안전조치가 있지만 만약 신분을 완전히 감추거나 새로 개명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나 법적 절차, 그 한계, 국가의 지원여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는 “형의 감면에 있어서도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 등이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거나 사건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경우 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형의 감면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의 소지가 있다.¹⁰⁹⁾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나 목격자 등 참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

109) 허경미, 앞의 논문, 129면.

또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대질신문 등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목격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참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식별장소를 마련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법정에서의 증인에 대한 보호도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증인을 위한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하여 피고인 등과 만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직장이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증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공개 재판이나 분리 신문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여 증인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증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¹¹⁰⁾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3. 不正收益金 沒收規定 改正

조직폭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금 취득활동을 근절시키는 방법인데,¹¹¹⁾ 폭력조직은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므로 자금원을 단절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조직이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축척한 자금을 대하여는 세제상 징수방법으로 거둬 들이는 한편 탈세 등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¹¹²⁾ 특히 민사개입폭력과 기업대상폭력에 의한 불법자금 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대상에 대한 폭력들이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향후 폭력조직이 대형화, 기업화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개입 폭력인 경우 민사거래로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의 단속이 어렵고 그 피해 대상자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또한 기

110) 허경미, 앞의 논문, 165면.

111) 조관석, 「범죄수의 박탈을 위한 입법론」, (형사정책연구원, 1992), 121-122면.

112) 백성일, 앞의 책, 207면.

업 대상 폭력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비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 밖에 최근 폭력조직이 유흥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등 합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폭력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하거나 각종 불법활동의 결과 취득한 이익을 은닉·위장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같이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조직폭력 범죄의 속성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각종 범죄에 관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각종 범죄에 관여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다시 합법 및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의 재창출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행 형법상 몰수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몰수는 부가형이며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적 몰수는 형법 134조(뇌물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3조, 기타 약물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뇌물이나 약물과 관련한 몰수일 뿐 조직폭력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조직폭력 범죄의 규제에 가장 중요한 불법적 이익을 몰수할 법규가 없는 실정이라서 효과적인 자금원 차단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¹¹³⁾ 또한 몰수형이 청구된 경우에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몰수 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하나인 '범죄된 사실'과 '몰수범위'가 상호대응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즉 주된 범죄에 대한 기소가 없으면 몰수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조직폭력의 불법자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몰수대상과 범위를 조직범죄로 확대하고 수익금인 경우 정상적인 수입경로를 밝히지 못할 경우 재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정함으로써 50-70%의 재산 몰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13) 최병민, 앞의 논문, 66면.

이를 위해선 개인 재산권 침해 시비를 막기 위해 몰수의 대상범죄, 몰수의 범위와 몰수요건, 몰수재산의 보전조치, 제3자보호, 몰수재산의 관리, 입증책임의 완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¹⁴⁾

第 2 節 搜查制度의 改善 方案

1. 專擔 搜查體制 設置 및 要員 專門化

조직폭력은 영속성을 갖는데 반해 수사요원은 동일성(인사이동, 상설전담요원의 부재 등)과 배치되는 점, 전문수사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점, 수사활동의 위험성으로 인한 수사요원의 기피현상, 조직폭력의 광역화로 인한 수사기관의 관리문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장기간의 기획수사로 인한 활동비 과다소요, 국제조직 범죄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갈수록 교묘해지고 비호세력으로 둘러싸인 조직폭력 범죄집단을 현행 檢·警察의 취약한 수사체계로는 조직범죄집단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

현재 檢·警 수사기관의 조직범죄수사에 대한 수사는 중복되거나 경찰이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나 보강수사를 벌이는 등 이중 수사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범죄전담 수사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다.¹¹⁵⁾ 이런 체제는 필수적으로 각종의 비호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기관의 압력 등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독립 기구이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

114) 최병민, 앞의 논문, 76-77면.

115) 허경미, 앞의 논문, 153면.

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요원을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조직범죄에 대하여 수사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장의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효율적인 수사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전담수사요원의 확보는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수사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담수사요원은 체계적인 실무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전문화하여야 하며,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 등에게는 한 분야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장기근무에 따른 인사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¹¹⁶⁾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2. 情報管理 徹底

2000년 10월 서울경찰청에서 사채업을 일삼는 ‘뚝방파’ 12명을 조사했는데 강매, 무전취식, 활동자금 수납 등 범죄행태는 분명한 조직폭력이었지만 “행동강령이 없다, 조직으로 결성된 적이 없다”며 조직자체를 부인해 단순폭력사건으로 처리된 적이 있었다. 이는 정보수집의 중요성 즉, 공소유지기 위한 증거의 미흡의 한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범죄활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발견이 중요하다. 즉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목적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용할 수 있으려면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조직범죄로 인한 사건을 일반범죄로 처벌하는 예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은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고 통제될 수 있을 지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법들을 개발하여 조직범죄에 필적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야만 한다. 또한 정보의 산출은 일견해서 조직범죄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여 조직범죄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대조,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116) 신광식, 앞의 논문, 72면.

전략적인 정보와 전술적인 정보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을지라도 전술적 정보의 주요 목적은 경찰활동계획을 지원하고, 용의자의 체포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情報員을 밝히는 것이다. 숙련된 정보분석은 법집행 정보의 效果的인 적용을 크게 향상시킨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정보의 수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증거로서 검색되고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항상 수집되어야 한다.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갖춰 조직범죄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조직은 물론 계획중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활용하면 유용하다.¹¹⁷⁾

조직폭력에 대한 상설적인 전담수사체제가 설치되지 못하여 정보수집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효과적인 수사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지속적 감시 및 관찰을 통한 동태과악 및 정보수집이 아니라 임시적인 요인에 의한 단편적인 정보만이 존재할 뿐이다. 수사기록 이외에는 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내부자료 등도 정보화 되지 않고 그대로 유실된 상황이어서 수사에 활용할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도 圓滑하지 못하다.¹¹⁸⁾ 이런 현상을 시급히 시정해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3. 搜查技法의 開發

현재 우리나라 檢·警 등 수사기관은 조직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과 과학적 수사장비를 활용한 수사방법은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인 수사기법에 의존하고 있다.¹¹⁹⁾ 앞으로 우리나라 조직폭력도 외국의 조직범죄의 형태로 이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속적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하부조직원의 검거에 그치게 될

117) 김대식, 앞의 논문, 69면.

118) 김윤환, 앞의 책, 1274면.

119) 앞의 책, 1274면.

우려가 있으며, 평소 조직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함과 아울러 과거조직범죄에 대한 계층분석과 연구에 의하여 범죄조직의 계보와 그 옹호세력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정보로는 변화하는 조직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도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함정수사, 도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며 미국의 경우처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도청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수사 등을 허용케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첨단장비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¹²⁰⁾

4. 庇護勢力에 대한 團束 強化

조직폭력 범죄자들은 조직의 보호를 위하여 광범위한 비호세력을 형성하며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범망을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의 유력 인사나 관계공무원을 매수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이나 탈세의 목인이나 보조가 가능한 행정기관의 공무원, 심지어는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호 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폭력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조직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호세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들 비호세력들은 소극적인 보호 및 적극적인 범인은닉 등 다양하게 범죄집단을 비호하고 있으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거대화 및 유지·확대에는 절대적으로 비호세력이 필요하므로 범죄조직은 자금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매수하여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고있다.

이런 비호 세력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첫째, 폭력조직의 불법행위를 목인, 방조, 옹호해 주는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선 자체적인 내부감독기능을 강화하

120) 신광식, 앞의 논문, 72면.

여 비리가 적발되었을 시는 엄중문책해야한다. 둘째, 폭력조직이 정부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는 정치인이나 사업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배후 인물을 철저히 밝혀내어 처벌하고 셋째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폭력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 도피처나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한다.¹²¹⁾

第 3 節 犯罪豫防活動의 強化 方案

1. 靑少年과 暴力集團과의 連繫 遮斷

충남에서 발생한 태양회 사건처럼 기존 조직폭력들은 학교 불량씨클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비조직원으로 양성해왔으며 이는 학교폭력과 조직폭력이 체계적 연대가 드러난 첫 사례라고 한다¹²²⁾. 이처럼 폭력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충원을 통해 새로운 인적 구성원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학교 불량씨클, 비행청소년, 학교에서 퇴학이나 무기정학을 당한 10대들이다. 이들은 기존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요즘 문제되고 있는 학원폭력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조직폭력배를 흉내내 정부 폭력, 강간, 금품갈취 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으며 경찰과 교육당국이 파악한 전국의 중·고교내 폭력씨클 만도 1,000여개가 넘고있다.¹²³⁾ 이에 따라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소년 조직폭력 범죄자들에게는 실행의 선고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에 따라 사회적 적응을 키워 줄 수 있도록 법원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121) 최진규, 앞의 논문, 81면.

122) 제주일보, 2000년 9월 7일.

123) 중앙일보, 1995년 12월 1일.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폭력집단의 가입중용과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언론 및 방송, 출판, 영상제작 기관에서의 폭력조직과 관련된 인물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보도와 영상물 제작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동경심을 갖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실제범죄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존과사건 때도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넘어 범죄수법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방심리를 부추킨 면이 있고, 일본만화를 모방한 학교폭력집단인 일진회, 이진회 사건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폭력일본도의 영상물의 해악성을 무성하게 거론하지만 일과성 논의로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아직 비판적, 합리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미화 영상물이 큰해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원폭력과 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해마다 5,000-1만명의 청소년이 폭력단에 가입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¹²⁴⁾ 현재 우리나라 학교관계자들은 불량폭력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학교의 명예와 인정상 이를 묵인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어 관계기관간 신뢰구축과 협력체제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요즘 일반적인 사회교육 제도와 대체교육이 미비한 시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를 자진하여 떠나는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 또한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학교를 떠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가정환경상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폭력집단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으로 쫓아내는 방식을 떠나서 각 지역별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문제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교화·선도시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교육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124) 백성일, 앞의 책, 208면.

이처럼 범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의식을 심어 주고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2. 社會環境 改善

범죄란 그 시대의 사회환경에서 생성하여 발전하므로 무엇보다도 폭력조직이 서식하기 쉬운 유흥업소 등 환경에 대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정책은 최선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 교육의 기회보장, 부모로부터의 이탈방지, 사회계층간의 갈등 최소화 등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폭력조직이 자라날 토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직폭력이 공권력과 대등해지거나 이에 맞설 만큼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투철한 도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폭력은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범죄활동을 잠재화시켜 조직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해 가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폭력의 수요를 제거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노력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3. 暴力追放 弘報活動 展開

일반적으로 범죄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내지 사회 일반인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공분을 느끼고 강하게 저항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폭력의 경우에는 업소보호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불법적인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불법적인 서비스나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일본에서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暴力團 排斥運動도 결국은 폭력단의 자금원 근절방안의 일환이며 폭력단의 물적 기반을 분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매스컴등을 통한 지속적인 폭력배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를 하여야¹²⁵⁾하며 이에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第 4 節 國際協力 強化 方案

국제범죄조직의 전세계적으로 세력확장과 함께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기 위해 국내침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국제범죄조직으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 야쿠자, 중국·대만·홍콩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를 들 수 있다. 이들 조직들은 국내범죄조직과 결탁하여 국내조직망을 구축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야쿠자인 경우 합법을 가장한 성금기탁, 장학회 설립 등을 통해 활동기반을 다지고 호텔, 백화점, 빌딩 등 부동산 매입, 카지노 등을 위장한 국내침투 또한 예상되며 삼합회도 여권위조, 위폐, 불법밀입국 알선, 합법을 위장한 사업체 운영을 통한 불법자금세탁, 카지노 등 오락 향락산업 분야의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 마피아인 경우 마약류 밀반입 뿐만 아니라 매출알선, 불법 돈세탁, 무기밀거래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해외교포 또는 내국인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자체 폭력단을 조직,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125) 전준열, 앞의 논문, 87-88면.

1. 國際刑事 共助機構 設立과 國家間 協助體制 維持

최근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조직범죄의 국제화 현상도 더욱 가속화되어 조직 폭력, 마약, 테러 등과 같은 조직범죄의 국제화, 거대화 현상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점차 거대화 되어가고 더욱 조직화된 갖가지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조직범죄인들은 국내에서 범죄를 행한 후에 외국으로 도피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형사공조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럽의 유럽경찰기구(Europol)와 같은 지역 국가간의 활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야쿠자와 같은 거대한 조직범죄집단이 자국에서의 폭력단 규제법의 시행으로 그들의 국내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해외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서둘러 거대한 조직범죄집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형사공조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와같은 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조직범죄에 관한 해결을 위한 성실하고도 인내력 있는 국가간의 관심과 노력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전세계를 무대로 암약을 기도하는 범죄조직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한 국가내의 수사당국 등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철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만 아울러 관련국가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조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다.

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서 범죄정보의 교환, 수사공조 및 수사기법의 전파 등을 들 수 있다.

1) 迅速한 犯罪 情報交換

조직범죄를 철저히 규제하기 위하여는 관련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비롯한

공조수사가 필수적인 데, 이는 국내적으로는 검찰, 경찰, 세관 등 관련기관 상호간의 공조와, 같은 기관 중 각 지역기관간의 상호공조를 함께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교환에 있어서의 정보는 한 국가 또는 관련국에 있어 수사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각종 범죄 또는 범죄조직에 관련된 광의의 정보를 말한다. 왜냐하면, 우선 정보교환에 있어 그 대상을 혐의의 정보 즉,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어느 한 국가에서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의 범죄조직의 동향 등에 대한 대처가 차단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황파악과 대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조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는 조사 전단계라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경향과 범죄수법 내지는 경향에 대한 분석 및 범죄조직의 주요인물들에 관한 신상명세 및 최근의 행적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관련된 국가간 범죄기도와 범죄조직의 제휴동향 등을 모두 망라하여 신속하게 교환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전대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搜查技法 등 傳播

범죄조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수사 등에 있어서는 각종범죄 정보 교환 이외에도 수사사례 및 새로운 수사기법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각국의 범죄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자국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범행수법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예방적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향후 수사체제 등 사법구조 개선과 실효성있는 입법 등에 귀중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자료의 교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인 예로써 양국의 마약 및 범죄조직 단속업무 담당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범죄백서, 경찰백서, 마약류범죄백서, 심사분석 책자, 구체적인 사건의 분석자료, 입법 또는 입법자료집 등의 정기적인 교환을 들 수 있다.¹²⁶⁾

126) 조선희, 앞의 책, 224-225면.

2. 關聯法規의 整備

외국범죄조직의 국내침투 및 외국범죄조직과 국내폭력조직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조직범죄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의 형태인 무기밀매, 달러 및 여권 위·변조, 신용카드사기, 합법투자를 위장한 거액의 불법자금유입 등에 대한 관련법규의 제·개정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절차와 외국인의 불법입국과 불법체류를 조직적·직업적으로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¹²⁷⁾

3. 인터폴을 통한 積極的인 共助搜查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국제조약인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범 공조조약'이 있으나 이러한 조약은 체결국가가 소수이고 그 내용상 한계와 절차상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이에 반해 인터폴(국제형사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은 각국의 경찰협력 기구로서 국가이념이나 국제조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고 실직적으로 공조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인터폴은 현재 전세계 17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국간 연락을 위해 원거리통신망(x-400)과 자동검색장치(AFS)가 구축되어있다. 이와같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성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2000년도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 중앙사무국'(KNCB,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사안은 총 1,310건으로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4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⁸⁾

127) 정진수, 앞의 논문, 75면.,

128) 경찰청, 「경찰백서」, 2001, 328-329면.

第 6 章 結 論

세계 어느 국가나 사회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름데로 조직범죄 집단이 온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집단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익이 되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파고드는 성질로 인해 침투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범죄집단이다. 이런 범죄집단의 위협성은 무엇보다 사회의 건전한 노동기풍과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조직폭력범죄의 폐해성을 인식하여 정권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법적용과 초법적인 강경책을 실시하였으나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적 기업활동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로 진출하여 외국범죄조직과 연계하는 등 국제화 진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직폭력집단은 지역적 조직폭력 수준이므로 미국·러시아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 홍콩·중국의 삼수회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확장될 토양과 여건은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연구는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의 지역별 형성과정과 현실태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조직폭력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야만 이에 맞는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직범죄로 저질러지는 범죄에는 마약, 인신매매, 밀수, 청부폭력, 사채폭력 등 많은 범죄유형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의 범죄는 조직폭력집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외국의 조직범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조직폭력집단의 위치는 '거대한 비즈니스' 단계로의 이행 전단계인 '합법적 비즈니스'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의 성장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히 시대별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부분 학교 및 지역주변 불량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책면에서 비호세력 척결과 청소년

범죄대책,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폭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현행법을 보면 법적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적절한 통제대책을 실시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증인보호에 관한 규정도 현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부정수익 몰수제도 역시 현행법상 몰수제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몰수제도의 법제정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직범죄 통합대책법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바와 같이 정치적 전환기마다 조직폭력에 대해 일제 단속식 대처 방안이나 수사기관에서 건수주의식 단속만으로는 조직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재 각 수사기관에는 조직폭력전담반이 있지만 타업무와 병행, 수사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옹호세력의 개입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수사 체계 자체가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폭력조직에 대해 장기적이고 치밀한 정보수집과, 비호세력을 배제할 수 있는 조직폭력 수사 전담체제(task force)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화에도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조직폭력의 생성과정이 학원 주변 불량배였음을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직원과 연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폭력학생을 대안학교로 흡수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에 의한 폭력추방운동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직폭력 집단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의 주체성 회복 운동이 선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간과해서 안될 것은 폭력조직을 미화하는 각종 매체물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만을 앞세워 지금처럼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또한 일종의 조직폭력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조직폭력범죄 중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범죄의 국제화 현상이다. 이는 곧 외국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조직의 확산성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간 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간 국제 형사 기구 설립과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인터폴을 통한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펼쳐야 하며, 국가간 정보공유, 수사기법 전수 등으로 국제적 범죄확산과 연계를 사전에 차단 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國內)

- 강지원, 「組織暴力羣의 跋扈實態와 對應現況」, 법무연수원, 1992.
- 경찰청, 「경찰백서」, 2000 - 2001.
- 김주학, 「조직상습 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1990.
- 김관근, 「민생범죄예방과 검거」, 한글, 2000.
- 노인수, 「달건 장밋했다 : 노인수 검사의 깡패 사냥기」, 도서출판 민현, 1997.
- 대검찰청,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3.
- David E. Kaplan/Alec Dubro (김자동 역), 「야쿠자 : 조직폭력 세계의 검은 내막」, 일월서각, 1992.
- 배종대, 「刑事政策」, 홍문사, 1999.
- , 「刑事訴訟法」, 홍문사, 1999.
- 서울지방경찰청, 「韓國 組織暴力의 實體」, 1999.
- 안 혁 편저, 「마피아 : 미국 조직범죄 세계의 100년 역사」, 지성문화사, 1999.
- 염장호, 「세계조직범죄론」, 오성출판사, 1998.
- 유기천, 「刑法學 各論 講義(下)」, 일조각, 1982.
- 이상현, 「犯罪心理學」, 박영사, 1998.
- 이윤호, 「刑事政策」, 박영사, 1996.
- 조선훈, 「세계의 조직범죄」, 청목사, 1993.
- 진단학회, 「한국사 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2. 學位 論文(國內)

- 김대식, “한국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 조직범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영철, “국제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원중, “한국의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창균, “비범죄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창균, “국가안보 위협요소로서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박석정,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광식, “조직범죄의 요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용식, “조직범죄 규제법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유남식, “국제조직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윤광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사례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윤 익, “일본폭력조직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치석,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침투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전준열, “한국의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지운,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최명숙,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최병민, “한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익서, “조직범죄의 수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최진규,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3. 學術誌, 雜誌(國內)

- 宮澤浩一 ; 조균석 역, “조직범죄와 기업의 피해자성”, 「피해자학연구」, 1996, 4.
- 권순택, “폭력조직”, 「신동아」, 1990, 3.
- 강구진, “집단범죄와 그 대책”, 「경찰고시 통권 제210호」, 1982, 4.
- 김보환, “아세아공동체 내에서의 조직범죄 통제를 위한 협력방안”, 「동국대행정대학원 행정논집 제24호」, 1996, 12.
- 김석종, “조직폭력계 거물 조양은 출소 앞두고 검·경 초비상”, 「뉴스메이커」, 1995, 3.
- 김영룡, “조직폭력사범의 수용실태와 대책”, 「교정」, 1992, 6.
- 김영종, “사회적 갈등과 집단행태 및 조직적 범죄의 원인분석과 예방전략”, 「교정」, 1989, 5.
- 김윤환, “조직폭력배 수사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경찰대학 고위정책과정 논문집」, 2000.
- 김준규, “조직범죄의 효율적 수사기법” 「強力檢事 研究論文輯Ⅱ」, 1993.
- 김종혁, “조직폭력배, 그 계보와 규율”, 「월간 중앙」, 1991, 1.
- 김주덕, “조직범죄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제도연구 (上)”, 「법조」, 1992, 5.
- , “조직범죄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제도연구 (下)”, 「법조」, 1992, 6.
- 김찬규, “조직범죄의 배후세력”,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0호」, 1995, 8.
- 김태열, “조직범죄에 관한 일고찰, 주로 racketeering 을 中心으로”, 「부산대법학연구 제25호」, 1976, 7.
- 나진영, “교정시설에서의 특정강력범에 대한 효율적인 수용관리 및 교정교화 방안 : 조직폭력 수용자를 중심으로”, 「법무연구」, 1998, 12.

- 박상옥, “조직범죄의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이론 검토 : 미국의 Conspiracy, Entrapment를 중심으로“, 「검찰 제103호」, 1992, 8.
- 박영규·정지운, “조직범죄의 특성과 유형”, 「경기대학교 행정논집 제12호」, 1998, 12.
- 백성일,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89, 12.
- 성낙현, “조직범죄와 그의 수익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1994, 8.
- 신의기, “국제조직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수사연구」, 1998, 2.
- 오규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본 조직폭력”, 「수사연구」, 1998, 10.
- 오선주·유인창, “약물조직범죄에 대한 규제방안”, 「청주대법학논집 제14호」, 1998, 12.
- 오세경, “조직범죄와 사회공생 단체”,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법무연수원, 1992.
- 양동안,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자유공론」, 1989, 6.
- 이동명,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1995, 12.
- 이병기, “조직범죄 수익 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8호」, 1994, 7.
- 이윤근, “국제 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1997, 12.
- 이채문, “이행경제 체제와 조직범죄 :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업(漁業)마피아를 중심으로”, 「경북대 사회과학」, 1999, 12.
- 이홍섭, “이행기 러시아의 사회병리 현상 : 조직범죄의 성행”, 「한양대학교 아태지역동향」, 1999, 4.
- 장병림 외, “현대사회는 조직폭력을 요구하는가 <좌담>”, 「광장」, 1986, 10.
- 장영민, “조직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8호」, 1994, 7.
- 점승헌,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제19호」, 1997, 8.
- 정진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 「수사연구」, 1998, 10.
- ,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집」, 1993.
- 정희상, “살상용 총기 당신을 겨눈다;개조·밀수된 고성능 불법 총기 10만정 유통, 각종

- 범죄·조직 폭력에 악용돼», 「시사저널」, 1996, 8.
- 조근석, “범죄수익 바탕을 위한 입법론”, 「형사정책연구」, 1992, 가을.
- 조선훈, “조직범죄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형사정책연구 제18호」, 1994, 7.
- 조성권, “카지노 자유화의 문제점 : 조직범죄의 시각에서”, 「정책연구」, 2000, 5.
- , “한국 조직범죄의 기원과 특성 : 1953-1960”, 「형사정책연구집」, 1997, 10.
- , “권위주의 정권下에서 한국조직범죄 성장원인, 1961-1962 : 정치적 시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집」, 1998, 6.
- 조성식, “한국 조직폭력 현주소”, 「신동아」, 2001, 3.
- 조승식,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12」, 1992.
- 조병인, “세계화 겨냥하는 조직폭력의 검은 실체”, 「새물결」, 1996.
- ,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 「수사연구」, 1996, 5.
- 지해범, “한국의 조직폭력”, 「월간조선」, 1989, 8.
- 최응렬, “조직폭력의 특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논총」, 1991, 1.
- 최석윤, “독일의 조직범죄”, 「형사정책연구소식」, 1995, 10.
- 최병민, “우리나라의 조직폭력 변천과정”, 「수사연구」, 1998, 10.
- 최명숙, “조직범죄의 역사”, 「충북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27호」, 1984, 6.
-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18호」, 1994, 7.
- 치안문제연구소, “미국의 경찰 ; 조직범죄대책”, 「치안문제」, 1993, 5.
- 하태훈, “조직폭력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대책”, 「치안연구소 치안논총」, 1997, 5.
- 허준영, “한국에서의 조직범죄”, 「수사연구」, 1999, 12.
- 허경미, “조직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교 논문집 제19호」, 1999, 12.
- , “국제사회의 조직범죄 대응전략 및 한국의 관련정책상 한계점”, 「수사연구」, 2000, 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규제방안”, 「형사정책연구집」, 1997.
 -----, “조직범죄의현황과대처방안: 제12회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연구집」, 1994
 한인섭, “조직폭력범죄의 법적통제 및 조직폭력범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모델에
 관한 연구”, 「비상근 연구위원 논문집」, 법무연수원, 1999.
 홍준표, “組織暴力 수사상 諸問題點”, 「強力檢事研究論文集(Ⅲ)」, 대검찰청, 1993.

4. 外國 文獻(日本, 美國)

加藤久雄, 組織犯罪の研究: マフィア, ラ・コーザ・ノストラ, 暴力團の比較研究, 成文堂, 1992.
 林則清, 組織暴力の一斷面: 或る捜査官の軌跡, 立花書房, 1996.
 法務省 法務總合 研究所, 「犯罪白書」, 東京: 大藏局 印刷局, 1982.
 Abandinsky Howard., 1999, *Organized Crime*, 3rd, Chicago; Nelson-Hall Inc.
 Albanese Jay., 1989, *Organized Crime in America*, 2nd ed, Cininnati; Anderson.
 Albini Joseph., 1971, *The American Mafia: Genesis of a Legend*, New York.
 Frank Schmalleger, PH.D, 1996, *Criminology Today*, Prentice-Hall.
 Hugh D. Barlow, *Introduction to Criminology*, Little, Brownand Company
 Hagan, Frank E, 1990, *Introduction to Criminology*, 2nd ed, Chicago; Nelson-Hall Inc.
 Jay Livingston, 1996, *Crime and Criminology*, Prentice-Hall.
 Lyman, Cichael D./Potter, Gray/Lyman, Michael D./Potter, Gary W., 1999, *Organized
 Crime*, Prentice Hall.
 Leonard Glick, 1995, *Criminology*, Allyn and Bacon.
 Levin Howard, 1999, *Journal of Critical Justice: Reflections on Organized Crime*, Blackwell.
 Stolberg, Mary M, 1995, *Fighting Organized Crime: Politics, Justice, and the
 Legacy of Thomas E. Dewey*, Northeastern Univ Pr.
 Torr, JamesD.(edt), 1999, *Organized Crime (Contemporary Issues Companion)*, Greenhaven Pr.
 Wilker, Josh/sarat, Austin(Edt), 1999, *Organized Crime(Crime, Justice, and Punishment)*,
 Chelsea House Pub(L).

SUMMARY

A study on Reality and Countermeasures to Organized Violence

YANG, CHANG-BA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kuhn)

Korean criminal organizations have become more serious in recent years and we can predict that the crimes will be more organized and internationalized in the future.

Recently, organized violent crime has penetrated where ever profits can be realized. In summary, in the past, the territory of crime families was limited to the entertainment business. Recently,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restrictions in territorial expansion and violence and racketeering tactics are utilized unmercifully wherever profits are to be made and domination is necessary.

In Korea, organized crime is represented by expansion of the scope of activities, connection to foreign criminal associations, the infiltration of organized crime into legal enterprises and political circles and an increase of juvenile gangsterism.

In recent years, organized crimes have diversified into different area of business in raising funds for their organization and have found ways to evade the authorities by setting up companies pretending to be legal.

In Korea, organized violent crime is regarded as a type of organized crime. There are many type of organized crime in Korea such as smuggling, pocket-picking, violence, human traffic, drug trade and so on. Organized crime is not yet a serious problem in Korea but demands on the necessity to meet the organized crime more actively to prevent trend toward mafia-typ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history of oraganized crime and present conditions.

In this thesis I treated this kind of problem and observed the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 countermeasures focused on a violence organization of organized crime in Korea.

I have suggested four countermeasures as criminal policy against organized violence in Korea.

First : the triumph of organized crime is, more often than not, accompanied by a weakening of law and sometimes even by a return to the law of the jungle.... So at this stag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ote considerable attention on the phenomen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organized crime. and perfect witness safety programs as well as rationalize correctional systems necessary to cope with organized crime.

Second : organized crime can no longer be tricked successfully by using traditional police investigative methods. Through legislation of the Organized Crime Control Act, improve the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establish task forces.

Third : it is necessary to link law enforcement to non-government movements. Organized violence can not be eradicated by the effort of law enforcement alone. Without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organized violence can be rampant ; and where there is a citizen's demand for illegal goods and services, criminal enterprises flourish so citizen's voluntary cooper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ombating organized is very important.

Fourth :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very effort to separate Korean criminal organizations from foreign criminal organizations an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regarding transnational crime an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Global Ac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telligence agency should take a greater responsibility in comba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Finally a joint task force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